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	---	---	---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세 현

목 차

I. 개 황

II. 소방청 소관 ·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회계	2
가. 세 입	2
나. 세 출	4
(1) 총 괄	4
(2) 전 용	5
(3) 이 월	5
(4) 불 용	6
2. 재무결산	8
가. 재정상태 분석	8
나. 재정운영 분석	9
다. 순자산변동 분석	11

III. 검토의견

1.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1131-303)	12
가. 개 요	12
나. 평가 지표의 변별력 제고 및 소방정책 종합평가 환류 강화 필요	13

2.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	30
가. 개 요	30
나. 소방병원 건립 내역사업: 건립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의 반복적 이월 부적절 ...	32
3.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1132-312)	44
가. 개 요	44
나. 119항공정비실 건립 내역사업: 공사비의 대규모 이월 부적절	46
다. 119항공정비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장비 확충 및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필요	56
4. 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	64
가. 개 요	64
나. 119빅데이터분석: 분석결과 활용도 제고 및 과제 관리 체계 개선 필요	66
5. 소방행정 정보화(정보화)(1150-506)	85
가. 개 요	85
나.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내역사업	86
(1)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이에 따른 전용 및 타 세부사업 예산 집행 부적절	90
(2)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성과 확인 필요	96
6.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1150-511)	99
가. 개 요	99
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집행 부진 및 대규모 이월	100
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108

7.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1171-301) 124

- 가. 개 요 124
- 나.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내역사업: 사업일정 추가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126
- 다.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 반복적인 일정 지연 및 이에 따른 예산의
연례적 이월 부적절 133
- 라. 소방선박 도입 일정 지연에 따른 ‘소방정대 운영’ 내역사업의 집행 부진 140

IV.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

- 1. 정부로부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된 사항 145

I. 개 황

-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5억 6,300만원이며, 총 48억 7,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8억 6,400만원을 수납하고, 1,000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 2025회계연도 소방청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	4,563		4,563	4,874	4,864		10
일반회계	4,563		4,563	4,874	4,864		10

※ 자료: 소방청

-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777억 4,900만원이며, 이 중 3,434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280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억 2,000만원은 불용 처리함.

< 2025회계연도 소방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감액	이 용 이체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31,129	345,620	32,139	-	±2,162	±2757	377,749	343,403	28,026	6,320
일반회계	331,129	345,620	32,139	-	±2,162	±2757	377,749	343,403	28,026	6,320

※ 자료: 소방청

Ⅱ.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4,563	4,874	4,864	106.6	99.8	0	10

※ 자료: 소방청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억 6,300만원이며 48억 7,4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99.8%에 해당하는 48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563	4,563	4,874	4,864	0	10
재산수입	273	273	158	156	0	2
경상이전수입	1,949	1,949	2,737	2,729	0	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70	270	222	222	0	0
수입대체경비수입	2,071	2,071	1,757	1,757	0	0

※ 자료: 소방청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차이	증 감 사 유
합 계	4,563	4,864	10	301	
재 산 수 입	273	155	0	△118	
관유물대여료	17	3	0	△14	중앙소방학교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화 지원기간 연장으로 반환금 발생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56	152	2	△104	국고보조금, 출연금 이자 감소
경상이전수입	1,949	2,729	8	781	
벌금 및 과태료	1	0	8	△1	사유 미발생
변상금 및 위약금	214	156	0	△58	지체상금 발생
기타경상이전수입	1,734	2,574	0	840	국고보조금, 출연금 집행잔액 증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70	222	0	△48	
면허료 및 수수료	200	113	0	△87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
잡수입	70	109	0	39	중앙소방학교 후생관 등 전기 및 수도 등 사용량 증가
수입대체경비수입	2,071	1,757	0	△314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1,174	663	0	△511	연구과제 선금 663백만원 수납, 잔금은 차년도 차년도 징수
기타잡수입	897	1,094	0	197	신규임용자 교육수요 증가

※ 자료 : 소방청

- 벌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 800만원은 징계부과금 감면 및 재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가 연내 개최되지 못함에 따른것이며, 기타이전수입 및 재산
수입 미수납액 2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이자 미납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1) 총 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56억 2,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21억 2,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777억 4,9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9%인 3,434억 4,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0억 2,600만원이고, 불용액은 63억 2,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	세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증 감	이 용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45,620	32,129	-	±2,162	±2,757	377,749	343,403	28,026	6,320
소방정책지원	257,599	22,133	-	±1,834	-2,757	276,975	243,871	27,329	5,776
소방행정지원	88,021	9,996	-	±328	+2,757	100,774	99,532	697	544

※ 자료 : 소망청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이 용	전 용
계	345,620	377,749	±2,757	±2,162
인 건 비	75,430	78,166	+2,757	-
기 본 경 비	10,535	11,023		322 -292
사 업 비	259,655	288,560	-2,757	1,840 -1870

※ 자료 : 소망청

(2) 전 용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21억 6,200만원임.

□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비용 및 기본경비 부족재원 3억 2,200만원, 중앙119구조본부 대용량포 외자구매 분 유로환율 상승으로 인한 부족 재원 3억 7,400만원 등을 전용 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 용 내 역
합 계	±2,162	
기본경비	322 -292	건강검진 비용 및 기본경비 부족분 마련(322) 등
사업비	1,840 -1,870	외자구매 유로환율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374) 등

※ 자료 : 소방청

(3) 이 월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전년대비 41억 300만원 감소한 280억 2,6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감액(A-B)	증감률
이 월	28,026	32,129	△4,103	△12.8

※ 자료 : 소방청

□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280억 2,600만원은 국가항만 중형 소방선(2척) 구매사업 122억 8,500만원,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87억 700만원(시설부대비 포함), 대형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22억원, 기본경비 5억 1,800만원 등이 각각 이월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 월 내 역
합 계	28,026	
절대공기 부족	8,908	항공정비실 건립사업(8,690), 국회업무관리시스템 구축(130) 등
계약 및 협의지연	4,513	대형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2,200),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구축 4차사업(1,363) 등
기타	14,087	국가항만 중형소방선(2척) 구매사업(12,285), 서산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1,320) 등
기본경비	518	소방청 및 소속기관 경상적 경비 이월

※ 자료 : 소방청

(4) 불 용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전년대비 3억 1,300만원 감소한 63억 2,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감액(A-B)	증감률
불 용	6,320	6,633	△313	△4.7

※ 자료 : 소방청

□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 63억 2,000만원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58억 9,0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8,3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4,700만원 등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불 용 내 역
합 계	6,320	
인건비 집행잔액	47	인건비 집행잔액
사업비 집행잔액	5,890	개별 사업비의 낙찰차액, 집행잔액
기본경비 집행잔액	383	기본경비 집행잔액

※ 자료 : 소방청

2.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2025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A)	2024년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자산	859,363	752,081	107,282	14.3
. 금융자산	3,781	3,537	244	6.9
. 유·무형자산	855,087	746,369	108,718	14.6
. 기타자산	495	2,175	△1,680	△77.2
II. 부채	5,286	2,009	3,277	163.1
. 차입부채	5,284	2,007	3,277	163.3
. 총당부채	0	0	0	0.0
. 기타부채	2	2	0	0.0
III. 순자산	854,077	750,072	104,005	13.9
. 기본순자산	102,344	102,344	0	0.0
. 적립금및잉여금	671,450	567,156	104,263	18.4
. 순자산조정	80,313	80,572	△258	△0.3

※ 자료 : 소방청

□ 2025회계연도말 기준 소방청 자산은 전년 대비 1,072억 8,200만원이 증가한 8,593억 6,300만원으로 유·무형자산이 1,087억 1,800만원, 기타 자산이 16억 8,000만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부채는 전년 대비 32억 7,700만원 증가한 52억 8,600만원으로 차입부채의 32억 7,7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40억 500만원 증가한 8,540억 7,700만원임.

나. 재정운영 분석

< 2025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A)	2024년도 (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가 - 나)	170,434	153,368	17,066	11.1
가. 프로그램총원가	172,184	154,692	17,492	11.3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750	1,324	426	32.1
II. 관리운영비	109,035	101,183	7,852	7.8
III. 비배분비용	145	256	△111	△43.4
IV. 비배분수익	3,595	3,684	△89	△2.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76,019	251,123	24,896	9.9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76,019	251,123	24,896	9.9

- ☐ 2025회계연도 소방청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704억 3,4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2,760억 1,900만원임.
- ☐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721억 8,400만원, 관리운영비 1,090억 3,500만원, 비배분비용 1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익 17억 5,000만원, 비배분수익 35억 9,500만원으로 구성됨.
- ☐ 2025년도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248억 9,600만원 증가한 2,760억 1,900만원임.
- ☐ 이는 주로 소방정책지원으로 발생하였고, 프로그램순원가는 1,704억 3,400만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90억 1,300만원, 경비 200억

2,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비배분비용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 프로그램순원가는 소방정책지원 프로그램(1,704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음.

다. 순자산변동 분석

< 2025회계연도 소방청 순자산 변동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A)	2024년도 (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750,072	644,683	105,389	16.3
II. 재정운영결과	276,019	251,123	24,896	9.9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380,282	356,800	23,482	6.6
IV. 조정항목	△258	△288	30	10.4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854,077	750,072	104,005	13.9

□ 소방청의 2025년도 기초순자산은 7,500억 7,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8,540억 7,700만원으로 기초순자산 대비 1,040억 500만원(13.9%)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1131-303)

-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 사업은 19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1년 간의 소방정책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평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방본부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최근 평가 결과를 보면 각 시·도 간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면서 미세한 점수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자체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 등 일부 지표는 모든 소방본부가 만점을 받는 등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표가 존재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소방본부에 대한 컨설팅 내용이 해당 시·도의 성과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향후 소방청은 평가 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 미흡 기관에 대해 구조적 진단을 바탕으로 예산·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수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환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 사업은 19개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1년 간의 소방정책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평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방본부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정책 운영의 효율성·책임성·통일성을 확보하여 소방정책의 성과 향상 및 국민이 더 믿고 신뢰하는 소방조직으로의 발전 유도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2025년도에는 예산액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집행률 100.0%).

< 2025회계연도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 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 이월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책우수 지역본부 지원	130	130				130	130	-	-	130

나. 평가 지표의 변별력 제고 및 소방정책 종합평가 환류 강화 필요

- 소방청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소방정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19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시·도 소방본부에 포상금(총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유공자와 기관을 표창하고 있음.

< 소방정책 종합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제1항¹⁾
- 「소방기본법」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조의4²⁾
-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소방청훈령)

(평가목적)

- 소방정책 운영의 효율성·책임성·통일성 확보를 통해 정책 성과 향상 및 국민이 더 믿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발전 유도

(평가대상) 19개 소방본부(창원 포함)를 특·광역시와 도 단위로 분리하여 평가

구 분	시도소방본부
시(9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창원
도(10개)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가방법) 정성·정량 지표를 활용한 절대·상대 평가

(평가 절차)

연번	단계	상세 내용 및 이행 시기
1	평가지표 검토 및 확정	- 시·도 소방본부의 평가지표 관련 의견 수렴 및 반영(전년도 10월-11월) - 최종지표 확정: 전년도 12월 말
2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기본계획 수립	- 해당연도 4-5월
3	평가	- (정량평가)시·도 실적 제출→ 본청 점검→ 시·도 점수 검토→ 최종 점수 확정 - (정성평가) 시·도별 시책 2건 선정 및 수행 → 성과 평가
4	평가 결과 확정 및 포상	

(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를 정책개선, 조직관리, 예산편성 등에 활용

※ 2025년 평가 결과 환류: 미흡 시·도에 대해서는 지표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시·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책관리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국민행복소방정책 맞춤형 컨설팅 개요 >

- (기간/장소) 2026. 4.2. ~4.24. / 희망기관 내 회의실
- (대상기관) 11개 기관(미흡 시·도 중 컨설팅 희망기관)
- (참 석) 혁신행정법무담당관(혁신성과계), 시·도 업무 담당자
- (주요내용)'25년도 지표 달성 결과 공유 및 '26년도 전략적 접근방법 제시 등

- 우수기관 포상 : 장관 표창 2 기관, 소방청장 표창 4기관

- 유공자(개인) 포상 : 장관표창 6명, 소방청장 표창 27명

- 재정인센티브 지원 : 6개 소방본부에 포상금 총 1억 3,000만원

-

구 분	특별·광역시		도(道)	
	기관 수(개)	포상금(원)	기관 수(개)	포상금(원)
계	3	65,000,000	3	65,000,000
최우수	1	30,000,000	1	30,000,000
우 수	1	20,000,000	1	20,000,000
장려상	1	15,000,000	1	15,000,000

※자료: 소방청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

□ 2021년 이후의 소방정책 종합평가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다량의 지표에서 국정과제 중심으로 세부지표를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세부지표 수: 2021년 108개 → 2023년 42개 → 2025년 35개).

또한, 소방청은 우수 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외에 2025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도에 대해서 2026년 4월에 지표별 취약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기본법」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 ④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 ⑤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소방청장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계획 수립의 적절성,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평가계획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년도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시·도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임.

<연도별 소방정책 종합평가 지표 개요>

연도	분야	항목	세부지표	예산(포상금)	(총점)	환류 내용
2021	8	46	108	130	2,410	포상
2022	7	15	50	130	1,000	포상
2023	7	15	42	130	900	포상
2024	7	13	36	130	819	포상
2025	7	12	35	130	738	포상, 컨설팅

※자료: 소방청

- 연도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만점이 1,000점 이하로 축소된 2022년 이후 시·도의 100점 환산 기준 평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시: 2022년 94.55점 → 2024년 96.75점 → 2025년 97.34점, 도: 2022년 92.83 → 2024년 94.79점 → 2025년 95.58점),
- 각 시·도 소방정책 운영 수준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고, 소방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통일성도 제고되고 있다고 보임.

<연도별 소방정책 종합평가 결과>

연도	구분	만점	원본		100점 환산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21	시(市)	2,410	2,345.2	31.4	97.31	1.30
	도(道)	2,410	2,321.4	28.5	96.32	1.18
2022	시(市)	1,000	945.5	21.5	94.55	2.15
	도(道)	1,000	928.3	20.8	92.83	2.08
2023	시(市)	900	865.1	17.6	96.12	1.96
	도(道)	900	848.2	16.9	94.24	1.88
2024	시(市)	819	792.4	14.9	96.75	1.82
	도(道)	819	776.3	14.4	94.79	1.76
2025	시(市)	738	718.4	12.4	97.34	1.68
	도(道)	738	705.4	12.7	95.58	1.72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 재가공)

□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 먼저, 최근 평가 결과를 보면 각 시·도 간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면서 미세한 점수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고 일부 지표의 경우 지표 자체의 변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소방정책 평가 지표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³⁾, 각 부처는 평가를 통해 소관 정책·사업의 이행력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음⁴⁾.
- 소방청은 소방정책 종합 평가를 시·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상위 3개 기관에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포상 대상 기관 간 점수 차이가 매우 미미한 수준임.

예를 들면, 시의 경우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3위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4위 간의 총점 기준 점수 차이는 0.7점에 불과하고(100점 환산시 0.02점 차이), 도의 경우 1~ 3위까지는 100점 환산 점수로 94점 대에 위치하고 있고, 4~7위까지는 92.24점~93.74점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22년 이후 시 또는 도 간의 표준편차⁵⁾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됨(시: 2022년 2.15 → 2024년 1.82 → 2025년 1.68, 도: 2022년 2.08 → 2024년 1.76 → 2025년 1.72). 특히, 도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감사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보고 I, 2026. 5., 62면.

5) 표준편차란 통계집단의 분산의 정도 또는 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평균값에서 변량들의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임.

단위 그룹의 전체 점수 분포는 100점 환산 점수가 2024년 1위와 최하위 간 격차가 5.62점에서 2025년 5.09점으로 축소되었음⁶⁾.

- 이와 같은 점수의 상향 평준화는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정책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단순한 서류 미비나 경미한 오류⁷⁾가 전체 순위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류 중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⁸⁾.

6) 참고로, 시 단위 그룹의 경우 2025년도에 1위와 최하위의 환산 점수 차이는 10.87점임.

7) 예를 들면, 2024년도에 소방 드론 자격자 배치 및 관리·운영계획을 2024년 1월 3일에 수립하여 점수가 1점 감점된 소방본부가 있었음(2023년 12월 말일까지 계획 작성 시 만점임).

8) 감사원은 각종 평가 과정에서 “피평가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노력·성과 등에 대한 실적보고서 작성과 같은 평가자료 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감사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보고서 I, 62면. 2026. 5.)

<2025년도 시·도별 소방정책 종합평가 점수>

순위	시	총점 (A)	100점 환산 점수	바로 윗 순위와의 차이	비고
1	A	690.36	93.54		최우수
2	B	678.6	91.95	1.59	우수
3	C	674.31	91.37	0.58	장려
4	D	674.14	91.35	0.02	
5	E	659.38	89.35	2	
6	F	657.92	89.15	0.2	
7	G	654.69	88.71	0.44	
8	H	653.57	88.56	0.15	
9	I	610.07	82.67	5.89	

순위	도	총점 (A)	100점 환산 점수	바로 윗 순위와의 차이	비고
1	J	698.58	94.66		최우수
2	K	695.53	94.25	0.41	우수
3	L	695.42	94.23	0.02	장려
4	M	691.83	93.74	0.49	
5	N	684.17	92.71	1.03	
6	O	682.43	92.47	0.24	
7	P	680.76	92.24	0.23	
8	Q	674.4	91.38	0.86	
9	R	667.03	90.38	1	
10	S	661.01	89.57	0.81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 재가공)

<2024년도 시·도별 소방정책 종합평가 점수>

순위	시	총점 (A)	100점 환산 점수	바로 윗 순위와의 차이	비고
1	A	761.8	93.02		최우수
2	B	752.2	91.84	1.18	우수
3	C	746.5	91.15	0.69	우수
4	D	740.2	90.38	0.77	
5	E	706.1	86.22	4.16	
6	G	699.6	85.42	0.8	
7	H	698.6	85.3	0.12	
8	F	698.1	85.24	0.06	
9	I	631.4	77.1	8.14	

순위	도	총점 (A)	100점 환산 점수	바로 윗 순위와의 차이	비고
1	J	784	95.73		최우수
2	M	764.9	93.39	2.34	우수
3	Q	755.1	92.2	1.19	우수
4	K	751.6	91.77	0.43	
5	R	748.8	91.43	0.34	
6	P	743.8	90.82	0.61	
7	O	743	90.72	0.1	
8	L	742.2	90.62	0.1	
9	N	738.4	90.16	0.46	
10	S	738	90.11	0.05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 재가공)

- 한편, 정량평가지표의 경우 2025년도의 평가지표별 배점은 3점부터 20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표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예를 들면,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 지표,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무중단 운영 지표 등 일부 지표의 경우 2년 이상 연속해서 모든 소방본부가 만점을 획득하였고,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100점 만점 환산 시 기본점수 73.3점), 재난상황 관리 평가(100점 만점 환산 시 기본점수 70점) 등의 지표는 기본점수와 최대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변별력 부족 평가지표(예시 1) >

구 분	평가지표명	최고점	최저점	비고
2025년 모든 소방본부 만점 획득 지표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	10	10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무중단 운영	7	7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 점검	8	8	
	소방 드론 자격자 배치 및 관리·운용계획 수립	15	15	

<변별력 부족 평가지표(예시 2)>

구 분	평가지표명	최고점	기본 점수	비고 (100점만점 환산시 기본점수)
2025년도 성과 평가 결과 최고점 대비 기본점수 비율	재난상황관리 평가	20	14	70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10	5	50
	주택화재 사망률 저감	10	4	40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15	11	73.3

- 이에 평가 지표의 난이도 및 배점 구조를 재검토하고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현장 대응 역량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음으로, 소방정책 종합평가의 환류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소방청은 2025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시·도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 시·도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표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시·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국민행복소방정책 맞춤형 컨설팅 개요>

- **(기간/장소)** 2026. 4. 2. ~ 4. 24. / 희망기관 내 회의실
- **(대상기관)** 11개 기관(미흡 시·도 중 컨설팅 희망기관)
- **(참 석)** 혁신행정법무담당관(혁신성과계), 시도 업무 담당자
- **(주요내용)** '25.지표 달성 결과 공유 및'26년도 전략적 접근방법 제시 등

- 이러한 컨설팅은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으로 연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특히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2025년도 성과가 미흡한 시·도에 대한 컨설팅 내용이 주로 평가 지표 달성 수준을 우수 기관과 비교·설명하고 차년도 평가

대응을 위한 전략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해당 시·도의 성과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성과가 저조한 근본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자원 배분 방안 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평가 결과를 예산·인사 등에 연계하고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8조제1항9)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소방정책이나 지역 소방정책을 수립할 때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2조¹⁰⁾), 소방정책 종합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 간 안전 격차 해소를 통한 보편적 소방 서비스의 구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서열화나 평가 대응 중심의 컨설팅을 넘어,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지표의 반복적인 저성과 원인에 대한 조직·인프라 수준의 진단을 병행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 지원,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수단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환류 체계를 보완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10)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소방청장은 평가 결과를 소방정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소방정책 수립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훈령에 의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도소방본부나 소방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나 그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소방청은 지표 변별력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담당부서 의견 검토를 거쳐 전 기관 만점 지표(4종)는 만점 기준 상향 조정 또는 폐지하고, 변별력 부족 지표(4종)는 최고~최저점 간 점수 편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고, 각 부서별 핵심 현안과 관련된 신규 지표 개발 및 추가, 목적 달성 지표 폐지 등 지표 현행화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 변별력 부족 평가지표 상세 내용

□ 2024년 및 2025년 모든 소방본부 만점 획득 지표(4개)

평가분야	② 예방안전 / 1.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지표번호	②-1-②	지표명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평가점수	10	가 점	-	감 점	-

①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 : 10점

$$\frac{\text{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사항 안내문 발송 건수}}{\text{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총 대상 수}} \times 100$$

※ 소방훈련 총 대상 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1·2·3급, 공공기관(10인 이하,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제외) / 2025년 화재예방통계 자료(12. 31. 기준)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관련 안내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운영 안내율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60% 이상 80% 미만	60% 미만
점수	10점	7점	4점	2점

평가분야	④ 현장 지원 / 1. 장비관리 및 정보통신				
지표번호	④-1-①	지표명	119 출동 관련 정보통신 운영 강화		
평가점수	15	가 점	-	감 점	-

②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무중단 운영 7점

회선/시스템 중단시간	무중단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이상
점수	7점	5점	4점	3점	1점

※ 전용회선,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 장애발생으로 인한 연간 서비스 중단시간
- 서버 증설 및 교체 등을 인한 작업 중단시간 제외

③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 점검 8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점검 (① 통화그룹 변경 및 주통화그룹 설정, ② 기관통화그룹과 공통통화그룹 구분, ③ 공통통화그룹 참여 및 퇴장)			
3개 ~ 2개 초과 조작 완료	2개 이하 ~ 1개 초과 조작 완료	1개 이하 ~ 0개 초과 조작 완료	0개
8점	5점	3점	0점

※ 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등 현장 점검결과 반영(2회 이상시 평균점 적용)

평가분야	③ 현장대응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③-2-⑤	지표명	소방 드론 자격자 배치 및 관리·운용계획 수립		
평가점수	15	가 점	-	감 점	-

④-1.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자격자 배치율(%) 5점

$$\frac{\text{㉠ 자격 보유 대원수}}{\text{㉡ 운용부서 현원}} \times 100$$

㉠ 운용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체의 자격자 이상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6조 참조(연료중량 포함한 최대이륙중량250g 제외)

㉡ 소방 무인비행장치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서

※ 예) 현장대응단, 119구조대, 대응구조과(지휘조사팀)

배치율	30% 이상	25% 이상 30% 미만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④-2. 소방 무인비행장치 관리·운용계획 수립 10점

기준	전년도	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초과	미수립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0점

①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3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 비행장치 관리 운용계획을 수립

② 6점~9점의 점수는 2025년 관리 및 운용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 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수립한 경우를 의미함

□ 2025년도 성과 평가 결과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편차가 적은 지표(4개)

평가분야	③ 현장대응 /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지표번호	③-4-①	지표명	재난상황관리 평가		
평가점수	20	가 점	-	감 점	-

① 재난상황관리 평가 20점

$$\frac{\text{건별 점수의 합}}{\text{대응 1단계 이상 또는 사망자 3명 발생 재난 건수}} \times 100$$

연평균 점수	80이상	80미만~75이상	75미만~70이상	70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 ※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에서 既 운영 중인 재난 상황관리 평가 계획에 따라 추진
- ※ 상황대응 조치결과 평가지표(체크리스트) 활용 건별 평가*, 연평균 점수 산정
 - * 총 11개 지표(정량 지표 11) 100점
- ※ 연평균 점수에 따라 시도별 차등 배점
- ※ 대응 1단계* 이상, 사망자 3명** 발생 재난에 대한 평가(정량)
 - * 30분 이내 종료된 대응 단계 발생 재난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상황 종료 후 인명피해 현황 변경, 범죄에 의한 다수 인명피해, 실종·자살 등 제외

평가분야	③ 현장대응 /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지표번호	③-3-①	지표명	중증외상환자 대응 및 이송		
평가점수	20	가 점	-	감 점	-

②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권역외상센터) : 10점

$$\frac{\text{㉠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text{㉡ 중증외상환자 수}} \times 100$$

- ㉠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이송병원 수준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를 말함
- ※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 센터 선정병원 현황 참고

시 단위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40% 이상	40% 미만
도 단위	40% 이상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평가분야	① 특정평가관리 / 3.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표번호	①-3-①	지표명	주택용 소방시설 인식제고 통한 주택화재 사망률 저감		
평가점수	10	가 점	-	감 점	-

③ 주택화재 사망률(%) 저감 : 10점

$$\left[\frac{\text{주택화재 사망자 수}}{\text{주택화재 발생건수}} \times 100 \right] - \left[\frac{\text{3년 평균 주택화재 사망자 수}}{\text{3년 평균 주택화재 발생건수}} \times 100 \right]$$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주택화재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장소 검색조건을 '주거' 시설 중 단독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주상복합 제외) 결과로 한정함

사망률 저감	2.0 이상	1.16 ~ 1.99	0.31 ~ 1.15	0.30 ~ -0.30	-0.31 ~ -0.65	-0.66 ~ -0.99	-1.0 이상
점 수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 당해연도 시.도 주택화재 사망률(%)이 전국 주택화재 사망률(%)의
85% 이하일 경우 5점 부여

※ 산식 결과 양수는 사망률 증가, 음수는 사망률 저감

평가분야	⑦ 정성평가				
지표번호	⑦-2	지표명	시책, 역량 평가 및 대회		
평가점수	35	가 점	-	감 점	-

④-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 10점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10위
점수	10점	9.5점	9점	8.5점	8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된 경우 해당 소방 본부에 점수 부여

④-2.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 5점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10위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 소방청 주관 자체(외부전문가 등) 추진실적 평가점수 부여

2.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

-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병원을 충북 음성에 건립하는 사업임. 2020년 사업착수 이후 2025년 7월 준공되기까지 매년 예산현액의 약 20~ 50%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연평균 이월액: 61억 7,200만원), 이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지연된 데 주로 기인하는 바, 사업계획 단계에서 관련 위험요인과 추가 소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인 총사업비 조정(총 12회 조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소방청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방병원 건립 사업비를 66억 4,900만원 증액 편성(2025.7.4. 국회 의결)하였으나, 소방병원 준공(2025.7.3.) 이후 12억 1,400만원을 이용감액하고 23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편성하는 예외적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 직후 사업 종료 단계에서 추경 예산액 대비 53.5%에 이르는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추가 소요액 산정이 적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임.

향후 소방청은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적정한 예산 비목 편성·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가 자산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 및

1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진료
2. 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 수행 전담 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최초 예산액이 624억 1,800만원이었으나, 제2차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66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9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126억 6,800만원과 이용 감액 12억
1,4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05억 2,100만원임. 이 중 96.4%인
776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0.7%).

< 2025회계연도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 이월	이.전 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소방병원 건립	62,418	69,067	12,668	△1,214	-	80,521	77,626	543	2,352	41,451
소방병원 건립	40,685	47,334	12,668	△1,214	-	58,788	55,893	543	2,351	-
개원준비단 운영	21,733	21,733	-	-	-	21,733	21,733	-	-	41,451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나. 소방병원 건립 내역사업: 건립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의 반복적 이월 부적절

-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조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 병원을 충청북도 음성에 건립하는 사업임.

<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개요 >

□ 건립개요

- (규 모)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종합병원
 - 연면적 (당초) 32,814m² → (최종) 39,433m²
- (사업기간)
 - (당초) ‘20 ~ ‘24년 (기본·실시설계 ’20 ~ ’21년 / 공사기간 ’22 ~ ’23년)
 - (최종) ‘20 ~ ‘25년 (기본·실시설계 ’20 ~ ’22년 / 공사기간 ’22 ~ ’25년)
-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31 (충북혁신도시 내)
- (총사업예산) (당초) 907억원 → (‘26.5월말 기준) 1,414억원

□ 주요기능

- 소방공무원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 생애기간 동안 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이력을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화상·정신건강·재활(근골격계)·건강증진센터 및 소방건강연구소 등 4센터·1연구소 중심으로 특화된 주요 상병 치료와 치유 및 연구 기능 강화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 수행

※ 자료 :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은 2020년 사업 착수 이후 2025년 7월 준공
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매년 상당 규모의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음.

○ 사업 시작 첫해인 2020년과 준공 연도인 2025년을 제외하면 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은 2021년 47.4%, 2022년 41.4%, 2023년 36.8%,
2024년 19.5%로 나타나,

사업기간 동안 매년 예산현액의 약 20~ 50% 수준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연평균 이월액은 61억 7,200만원임.

< 소방병원 건립 내역사업 시작 이후 연도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2026. 5월 말 기준)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B)	불용액	비고 (B/A)
2020	2,255			2,255	2,206	49	-	2.2
2021	2,757	49		2,806	1,238	1,329	239	47.4
2022	11,490	1,329	845	12,819	5,988	5,310	1,521	41.4
2023	25,919	5,310		31,229	19,589	11,506	134	36.8
2024	52,130	11,506	1,618	65,254	52,585	12,668	-	19.5
2025	47,334	12,668	△1,214	58,788	55,893	543	2,351	0.9
2026	-	543	-	543	32			

*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을 합한 해당 연도 편성액임.

※ 자료 :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연도별 이월·불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월			불 용		
	예산 과목	금액	사 유	예산 과목	금액	사 유
2020	기본조사 설계비	49	·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계약 지체 (‘20. 11. ~’ 21. 6.)		-	
2021	실시설계비	1,329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계약기간 연장 (‘20. 11. ~’ 21. 10. →22. 4.)	실시설계비	239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실 시설계비 집행 잔액
				연구용역비	80	·의료·운영 연구 용역비 낙찰 차액
2022	공사비	5,075	·공사(건축/전기/통신/ 소방) 장기계속계약 (‘22. 12. ~’ 25. 6.)	실시설계비	1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실시 설계비 집행 잔액
	감리비	196	·건설사업관리 용역 장기계속계약 (‘22. 12. ~ 25. 7.)	공사비	1,520	·공사 계약관련 낙찰차액
	시설부대비	39	·공사 관련 계약수수료		-	
2023	공사비	11,303	12월 2차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공사비	122	·지 열 시 스 템 정산잔액
	감리비	149	12월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공사비	12	·정산잔액
	시설부대비	54	부대경비 공사기간에 따라 이월			
2024	공사비	12,018	관급자재비 등 기성금 미지급분 이월		-	
	감리비	596	감리비 기성금 미지급분 이월			
	시설부대비	54	부대경비 공사기간에 따라 이월			
2025	공사비	543	미술작품 설치 지연에 따라 이월	공사비	2,352	건설공사 완 료 후 낙찰차 액

※ 자료 : 소방청

- 이와 같은 대규모 이월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지연된 데 주로 기인하는데,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관련 위험요인과 추가 소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인 총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소방병원 건립 사업 과정에서 2025년 말까지 총 12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졌음¹²⁾. 소방청은 당초 2021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 준공 및 2024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 변경¹³⁾, 소방병원 연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총사업비 조정, 입찰 및 계약 절차 장기화¹⁴⁾ 등이 발생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음. 건축공사 역시 당초 계획(2023. 12월)보다 약 1년 6개월이 늦은 2025년 6월에 완료되었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범진료 및 개원(당초 '24.12. → 실제 '26.6.) 일정 역시 당초 계획보다 순연되었음.

12) 소방청은 2020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12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을 하였는데, 이 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이 4차례 있었음.

소방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 규모 및 주요 조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2차 총사업비 조정('21. 12., 168억 2,000만원)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
- 3차 총사업비 조정('22. 06., 156억 6,500만원) : 물가변동분 반영
- 7차 총사업비 조정('24. 07., 112억 5,500만원) : 설계 변경분 반영
- 11차 총사업비 조정('25. 04, 33억 5,500만원) : 설계 변경분 및 민원 반영

13) 구체적으로, 설계용역기간 연장 사유는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에 따라 주차대수를 161.5% 증가 반영(지상4층, 지하1층 → 지상4층, 지하 2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함.

14) 소방청은 당초 공사 입찰 및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2달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약 6개월이 소요되었음[당초: 2021.11월 ~ 12월(2개월) → 실제: 2022. 7월 ~12월(6개월)].

이와 같이 공사 입찰 및 계약 기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소방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라 실시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당초'20.11~'21.10 → 변경'20.11~'22.7월)되어 이에 따른 사업추진이 순연된 것이라고 설명함.

< 소방병원 건립 사업 각 단계별 사업 지연 사유 >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일정 지연 사유
예비타당성조사		'18. 7. ~ '19. 11.	'18. 7. ~ '19. 11.	-
타당성조사		'20. 4. ~ '20. 5.	'20. 4. ~ '20. 5.	-
기본계획		'20. 4. ~ '20. 9.	-	-추진계획 변경 (턴키입찰 →설계공모)
기본설계		'20. 11. ~	'20. 11. ~	-
실시설계		~ '21. 10.	~ '22. 7.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 기간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
공사입찰 및 계약		'21. 11. ~ '21. 12.	'22. 7. ~ '22. 12.	-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 순연 -당초 계획 대비 입찰 및 계약 소요기간 증가
용지보상		-	-	-
공사	착공	'22. 1. ~	'22. 12. ~	-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 순연 등
	준공 ¹⁵⁾	~ '23. 12.	'25. 7. 3.	
의료기관 개설허가 ¹⁶⁾		'23. 12.	'25. 12. 18.	-사업 추진 일정 순연 등
모의진료 ¹⁷⁾		-	'25. 11. ~ '25. 12.	
시범진료 ¹⁸⁾		-	'26. 1. ~ '26. 6.	
개원		'24.12.	'26. 6. 8.	

※ 자료 : 소방청

15) 소방병원 준공계는 2025년 6월 20일에 제출되어 2025년 7월 3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함.

16) 소방청은 2025년 연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위한 필수진료과(7개과) 의료진 수시모집 중
- 간호직 등 일반직 2025년 상·하반기 채용으로 진행 중
- 개설허가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 구축 및 도입 12월까지 예정

17)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가상환자로 설정하여 전체 진료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실제진료행위는 없음)

18) 실제환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진료/검사/처치 등 실제 진료를 운영

< 소방병원 건립 사업 총사업비 조정내역(2026.6.1. 현재) >

구 분	총사업비 변경					
	조정	조정금액			조정사유	주요내용
		현행	순증	조정후		
2020 9.21	1차 (협의)	90,687	6,897	97,584	물가변동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결과(예타 기준 공사 산정 시점 ‘17기준)에 따른 공사 물가변동을 반영 ⇒ 공사비 6,897 증
2021 12.28	2차 (협의)	97,584	16,820	114,404	설계반영	· 연면적 조정(32,814㎡→39,224㎡)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주차대수 217대→357대) 반영을 위한 지하층 추가(지하1→지하2) **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 공사비 16,414 감리비 373, 부대비 33 증
					기간연장	·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공사 기간 1년 추가 * KDI 예타 : 설계 2020년, 공사 2021~2023년 **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 설계 2020~2021년, 공사 2022~2024년
2022 6.28	3차 (협의)	114,404	15,665	130,069	물가변동 설계반영	· 물가변동(최초공사 산정시점 ‘20.9월) 으로 인한 공사 물가변동을 반영 · 연면적 조정(39,224㎡→39,433㎡) * 주차장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통로면적, 진료공간 사용성을 고려한 소요면적 일부 조정 ⇒ 공사비 13,534 감리비 2,101 부대비 30 증
					기간연장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관련 설계기간 연장(8.5개월 순연) 및 공사 기간 검토 결과(조달청: 30.9개월)의 사유로 인한 공사 착공(‘22.12) · 준공(‘25.6) 일정 조정으로 사업기간 1년 추가
2023 2.20	4차 (자율)	130,069	△13,416	116,653	낙찰차액	· 공사&감리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13,416백만원 감액
2024 3.19	5차 (자율)	116,653	1,288	117,941	설계변경	· 안전시설 보강: 시스템비계 500백만원 ·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등 3건 774백만원 · 법정경비 반영: 안전점검 14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변경					
	조정	조정금액			조정사유	주요내용
		현행	순증	조정후		
2024 5.30	6차 (자율)	117,941	4,281	122,222	폐기물 처리 공공 지장물 이설	· 물가변동: 2,388백만원 · 관급자재비 변경: 563백만원 · 폐기물 처리: 788백만원 · 공공지장물 이설 ¹⁹⁾ : 160백만원 ·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208백만원 · 감리비: 174백만원
2024 7.24	7차 (협의)	122,222	11,255	133,477	설계변경	· 설계기준 강화 ²⁰⁾ : 44백만원 · 단순 설계변경: 의료가스 장비·배관공사, 헬리패드 등 10,699백만원 · 감리비: 488백만원 · 시설부대비: 24백만원
2024 8.8	8차 (자율)	133,477	1,004	134,481	비탈면 보강	· 비탈면 보강: 1,004백만원
2024 12.30	9차 (자율)	134,481	1,397	135,878	안전시설 보강	· 안전시설보강(시스템비계) ²¹⁾ : 611백만원 · 물가변동: 762백만원 · 관급자재비 변경: 24백만원
2025 3.19	10차 (자율)	135,878	893	136,771	관급 자재비 물가변동 안전시설 보강	· 관급자재비 변경: 84백만원 · 물가변동: 33백만원 · 안전시설보강(시스템비계) ²²⁾ : 776백만원
2025 4.14	11차 (협의)	136,771	3,355	140,126	민원반영 설계변경	· 민원반영 ²³⁾ : 106백만원 · 환경개선 ²⁴⁾ : 50백만원 · 안전시설 보강(책서포트) ²⁵⁾ : 25백만원 · 단순 설계변경: 가설계단 ²⁶⁾ , 소방공사 ²⁷⁾ 등 3,168백만원 · 시설부대비: 6백만원
2025 6.10.	12차 (자율)	140,126	1,244	141,370	안전시설 보강(교평) 등	안전시설 보강(교평반영) ²⁸⁾ : 1,008백만원 관급자재비 변경: 44백만원 물가변동: 39백만원 공공지장물이설 ²⁹⁾ : 153백만원
2026 3. 31.	13차 (협의)	141,370	-	141,370	사업기간 연장	· 소방병원 미술작품 설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동 사업 기간을 기존의 "2020년~2025년"에서 "2020년 ~2026년 12월"로 연장

※ 자료 : 소방청

□ 한편, 소방청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방병원 건립 사업비를 66억 4,900만원 증액 편성(2025.7.4. 국회 의결)하였으나, 소방병원 준공(2025.7.3.) 이후 집행잔액 35억 6,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12억 1,400만원은 소방청 인건비 재원으로 이용(移用)되었음³⁰⁾.

- 공사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편성하는 예외적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 직후 사업 종료 단계에서 추경 예산액 대비 53.5%에 이르는 대규모

19) 차도 확장 및 우·오수관 연결로의 광케이블 이설

20) 법령 개정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반영

21) 시스템비계(공사시 발판 역할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 건물 외부 변경분 반영

22) 시스템비계 건물 내부 변경분 반영

23) 개원준비단 요청사항으로 「의료법」 관련 규정 적용(중환자실 규정면적 적용 등 9건 42백만원), 편의사항(수술실 수동문을 자동문으로 교체 등 11건 64백만원)

24) 공사 진출입 차량 바퀴의 흙을 세척하기 위해 진출입로에 자동세륜기 한 대 추가 설치

25) 주차장 상부 작업차량 등의 하중 발생 시 구조적 안전성 확보위해 필요

26)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에 따라 건물외주 50m 이내마다 가설계단을 1개소씩 설치

27) 소방시설 설치 장소에 각종 배관이나 구조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하여 위치 이동에 따른 물량 변경

28) 음성군 경찰서 요청에 따라 차량방호안전시설보강, 신호등 보강, 도로포장 등 반영

29) 부지내 우수배관 외부 연결을 위해 공사 중 발견된 지장물 철거 외부 오수관 재시공

30)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0.1.>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추가 소요액 산정의 정확성 및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 향후, 소방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실제 소요를 보다 면밀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병원 건립 내역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국립소방병원 건립 공사비 지원:

(‘25) 40,685백만원 → (‘25 2회 추경) 47,334백만원(+6,649백만원)

-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25년 마무리 공사비 지원
- (산출)

(단위: 백만원)

연번	항 목	총사업비	증 액	합 계	변경일
1	8차 조정 (자율조정 4차)	133,477	1,004	134,481	'24. 08.
2	9차 조정 (자율조정 5차)	134,481	1,397	135,878	'24. 12.
3	10차 조정 (자율조정 6차)	135,878	893	136,771	'25. 03.
4	11차 조정 (협의조정 2차)	136,771	3,355	140,126	'25. 04.
합 계			6,649		

- (산출세부내역)

1. 자율조정(4차) : 1,004백만원(비탈면보강)
2. 자율조정(5차) : 1,397백만원(물가변동 등)
3. 자율조정(6차) : 893백만원(관급자재비변경, 안전시설보강)
4. 협의조정(2차) : 3,349백만원(설 계변경 등), 시설부대비 6백만원

※ 자료 :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관련 2025년도 이·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5.12.)	국립소방병원건립 (110-1131-305)	공사비 420-03	1,214	소방청인건비 (7000-7011-100)	보수 110-01	소방청 인건비 부족재원 마련 위해 국립소방병원 건립 불용 예정액을 보수로 전용
계			1,214			

※ 자료 : 소방청

□ 아울러 소방병원은 2025년 7월 3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비 5억 4,300만원이 2026년도로 이월되었음.

- 소방청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미술작품에
대하여³¹⁾ 충청북도 심의가 반복적으로 부결되면서 설치가 지연되고

31) 소방병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하고, 설치하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평가를 거쳐야 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 종료 단계까지 이를 적기에 완료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이월이 발생한 것은 사업 마무리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임.

<국립소방병원 미술작품 설치 관련 예산 이월 개요>

- 사업명: 국립소방병원 미술작품 설치

- 사업기간: 2025년 - 2026년

- 예산액: 511백만원

※ 예산지번호: 110-1131-305-420-03(국립소방병원 건립 공사비)

- 작품별 계약 현황

(단위: 천원)

업체명	작품	계약금액	계약기간(당초)	26년도 진행 현황 (2026. 6. 1. 현재)	비고
A	조형물	473,440	‘25.4.29.~’26.2.19.	미집행 (계약해지 진행중)	충청북도 심의 부결 4회
B	회화	37,560	‘25.11.20~’26.2.19.	미집행 (계약해지 완료)	충청북도 심의 부결 2회
C	조형물	161,000	‘25.8.29.~’25.12.6.	집행완료 (‘26. 3. 24.).	
계		672,000			

※ 자료 : 소방청

☐ 종합하면, 동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일정과 총사업비에 대한 예측이 충분하지 못하여 반복적인 총사업비 조정과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고, 사업 종료 단계에서도 추가경정예산 집행잔액

및 미술작품 설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발생하는 등 예산 편성과 사업 마무리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임. 향후 소방청은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의 수요 예측과 사업계획의 정확성을 높이고, 준공 전 관련 행정절차를 적기에 완료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예산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1132-312)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은 전국의 소방헬기를 한 곳에서 정비하기 위하여 119항공정비실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2025년도의 예산 집행률이 34.6%에 불과함(46억 1,300만원 집행, 87억 700만원 이월). 이는 부지 계약 지연, 연약지반 보강 공사 추가 및 법정 의무시설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시설의 실시설계단계 반영 등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한편, 2027년 7월에 준공 예정인 119항공정비실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적기 충원, 지자체 소유 헬기 정비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및 정비조직인증 취득, 중앙 -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향후 소방청은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 확충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통합정비 체계가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소방본부(21개 소방119항공대)에 분산되어 운영 중인 소방헬기를 국가가 통합해서 관리·운영하여 재난이 발생한 때에 시·도 경계를 초월한 광역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소방항공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에는 예산액 131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4년도로 부터의 이월액 1억 8,600만원³²⁾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33억 2,700만원임. 이 중 34.6%인 46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87억

32) 119항공정비실 건립 설계용역(2차) 준공금 이월액임.

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이월율 65.3%) 700만 원을
불용하였음(불용률 0.1%).

< 2025회계연도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13,141	13,141	186	-	-	13,327	4,613	8,707	7	8,782
○ 119항공정비실 건립	12,919	12,919	186	-	-	13,105	4,398	8,707	-	8,500
○ 항공대 안전관리 및 통합관리 지원	38	38	-	-	-	38	38	-	-	89
○ 소방헬기 정비 프로그램 유지관리	72	72	-	-	-	72	70	-	2	76
○ 소방드론 활성화 및 통합관리	22	22	-	-	-	22	21	-	1	27
○ 전국 소방헬기 통합 관리 운영방안 연구용역	90	90	-	-	-	90	86	-	4	-
○ 소방활동 유·무인 복합체계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	-	-	-	-	-	-	-	-	90

※ 자료: 소방청

나. 119항공정비실 건립 내역사업 : 공사비의 대규모 이월 부적절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은 현재 중앙(소방청) 및 각 시·도가 보유한 소방헬기를 각 시도에서 자체 정비하거나 외주 정비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방청이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하여 정비하기 위해 119항공정비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까지 5년간 총 373억원³³⁾이 투입될 예정임.
- 동 사업은 2023년 2월 완료된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 내역사업³⁴⁾과 함께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의 하나로, 소방헬기 정비 분야도 운항관제 분야와 같이 일원화하여 전국 소방헬기 정비 효율화를 도모하고 표준화된 정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3) 총사업비는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428억원이었으나, 3차 조정('26.1.) 및 4차 조정('26.5.)을 거치면서 2026년 6월 현재 373억원임.

34)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사업 개요 (자료: 소방청)

(필요성) 전국 소방헬기에 대한 운용 및 현장활동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필요
(사업단계) '22.07. ~ '23.02. 사업추진 완료 / 1,416백만원

※ 운항관제실 : 실시간 현장영상, 관제정보 상황판 표출, 지령 접수 단말기, 방송제어장치 설치 등

※ 항공지령관제시스템 구축 : 신고정보 수집, 출동자원 편성, 출동지령, 자원관리 등 지령관제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상황)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대전·충북·충남·전북) 시범운영* 실시 중

(1단계) 4개 시·도 * 시범운영 : '23. 4. 1. ~ '24. 5. 3.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2단계) 12개 시·도 * * 시범운영 : '24. 5. 4. ~ 현재 진행 중

**1단계 4개 시·도 + 8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대효과)

① 전국 소방헬기 출동체계 일원화(운항관제실 통합지휘·조정)

- 現) 시·도별 개별 출동 → 後) 소방청 통합 출동대응시간 단축으로 인적·물적 손실 절감

- 헬기 통합지휘(Control Tower) 및 항공자원의 효율적 활용·배치

② 소방헬기 재난현장 출동시간 단축

- 시·도 경계지역 재난발생 시 출동시간 단축

< 119항공정비실 건축규모 >



※ 자료 : 소방청

-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는 각 항공대 별로 1~3대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³⁵⁾,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가 출동지령·유지관리·정비·교육을 각각 시행함에 따라 조직·인력·예산 등이 중앙(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로 다원화되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은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국 소방 항공자원을

35) 소방청 및 각 시도는 총 31대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고 있음.

* 소방청 및 각 시도별 소방헬기 보유 현황은 [참고] 참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국 소방헬기의 운행과 정비를 일원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소방청은 현재 소방헬기 정비는 자체정비와 외주정비를 병행하고 있는데, 119항공정비실 건립을 통해 외주정비를 소방청 직접 정비 체제로 전환할 경우 정비 비용 24억원, 부품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액 22억원, 정비사 인건비 절감액 30억원 등 연평균 7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다만, 119항공정비실 건립 3차년도인 2025년도에는 예산현액 131억 500만원 중 43억 9,800만원만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집행 내역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건설보상비(12억원)와 실시설계비(1억 8,600만원)는 전액 집행되었으나,

공사비(114억 9,500만원)는 29억 7,800만원만 집행되고 85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이월율 74.0%), 시설부대비(5,100만원)은 3,400만원만 집행되고 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이월율 33.3%), 감리비(1억 7,300만원)는 전액 이월되었음(이월율 100.0%).

<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2026년도 예산 집행은 26. 6월 말 기준)

구 분	총사 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3			'24			'25			'26		'27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예산현액)	집행	이월	예산 (예산현액)	집행	이월	예산 (예산현액)	집행	예산(안)
건설 보상비	6,777	1,200	1,200		1,200	1,200	-	1,200	1,200	-	3,177	3,177	-
기본 설계	542	218	159	59	324 (383)	383	-		-	-	-	-	-
실시 설계	756				813	532	186	- (186)	186	-	25	-	13
공사비	26,340				1,218 (0)	-	-	11,495	2,978	8,517	3,883 (12,400)	437	10,962
감리비	2,826				24	-	-	173	-	173	1,400 (1,573)	191	1,253
시설 부대비	84				8	-	-	51	34	17	15 (32)	17	18
합계	37,325	1,418	1,359	59	3,587 (2,428)	2,115	186	12,919 (13,105)	4,398	8,707	8,500 (17,207)	3,822	12,246

(*총사업비 금액은 예산현액 기준, 2025년도 결산액 기준임)

※ 자료: 소방청

○ 이는 119항공정비실 건립 일정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었기
때문임.

- 당초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토지매매 계약을
2023년 3월에 완료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2024년 4월까지
끝내며 공사계약을 2024년 8월까지 마친 후 2024년 9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토지매매 계약이 당초 계획(2023. 3월)보다 약 9개월 늦은 2023년 12월에 완료되었고³⁶⁾ 이에 따라 이후 일정이 모두 지연되었음.

- 또한, 2024년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공사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였고³⁷⁾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³⁸⁾ 및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증액 협의(1차)에 시간이 소요되었음.

이에 공사 계약도 당초 계획(2024년 8월) 대비 약 16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5년 11월에 이루어졌고, 2025년 12월에 공사에 착공함에 따라 공사비 예산(114억 9,500만원)의 74.0%인 85억 1,700만 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음.

36)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소음 등 주변지역 피해와 관련한 검토 기간이 필요해 토지 매매계약이 수개월간 지연되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37) 소방청은 지질조사 결과 사업부지가 매립층 및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지내력 확보를 위한 파일공사 반영이 필요하였고, 사업부지 GL-4m(지표로부터 4m이하)에 지하수위가 있어 기초 하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차수공법 및 영구 배수 공법 적용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38) 소방청은 설계 적정성 검토는 총사업비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행정절차(과업기간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님)로 설계용역 구간에 포함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설계 적정성 검토는 총 3회 시행되었는데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합쳐 184일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함.

<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구 분	당초계획 (2022. 5월 기준)	2024. 9월 기준 계획	2025. 6월 기준 계획	2026. 5월 기준 계획
건립부지 선정	'21.12월	'21.12월	'21.12월	'21.12월
건립예산 확보	'22.12월	'22.12월	'22.12월	'22.12월
토지매매 계약	'23.3월	'23.12월	'23.12월	'23.12월
설계공모	'23.4월 ~ 7월	'23.11월	'23.11월	'23.11월
기본설계	'23. 8월 ~ 12월	'23.11월 ~ '24.7월	'23.11월 ~ '24.7월	'23.11월 ~ '24.7월
실시설계	'24.1월 ~ 4월	'24.7~'24.12월(예정)	'24.7월 ~'25.7월	'24.7월 ~'25.7월
인허가 처리	'24.8월	'24. 10월(예정)	'24. 12월	'24.12월
공사계약	입찰('24.5월) 계약('24.8월)	'25.1월~3월(예정)	'25.9월~ 10월(예정)	'25.11월
공사착공	'24.9월	'25.4월(예정)	'25.10월(예정)	'25.12월 ³⁹⁾
관급자재 발주·공사	'24.12월~'26.1월	'25.1.~'26.9월(예정)	'25.10.~'27.6월(예정)	'25.12.~'27.7월(예정)
준공	'26.3월	'26.4분기(예정)	'27년 6월(예정)	'27.7월(예정)

※ 자료 : 소방청

- 한편, 119항공정비실 실시설계 기간이 당초 계획(2024년 1월~4월)보다 지연되어 약 13개월(2024년 7월~2025년 7월)이 소요되었는데,

39) 119항공정비실 건립 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없었음. 이와 관련해서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건립 공사는 동절기(12월~2월) 중에 토공사(터파기, 흙막이 등)를 진행 후 2026년 3월 이후 콘크리트 양생 공정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이는 1차 총사업비 조정(2024. 12.)을 통해 해결한 연약지반 보강 공사 재원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법정의무 시설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요건⁴⁰⁾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면서 공사비가 증액되어 2차 총사업비 조정(2025. 6.)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⁴¹⁾.

- 당초 기본설계 단계에서 법정의무시설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가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2021.4.~11.) 시 유사 사례로 경찰청 충북항공대 격납고, 해양경찰청 포항격납고 등을 참조하였는데 해당 시설에는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에너지분석 결과 산출된 내용 등이 불확실하여⁴²⁾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재검토하기로 조달청과 협의하였다고 설명함.

40) 119항공정비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2024~2025년에 신축하는 건축물이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공급의무비율이 34%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3. 5.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垆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1) 소방청은 기획재정부와의 2차 총사업비 조정을 2025년 6월에 완료하였음.

42)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및 중간)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 면적 미확정으로 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유동적이어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 그러나, 경찰청 충북항공대 격납고, 해양경찰청 포항격납고는 ‘운수시설’이고 소방청의 119항공정비실은 ‘업무시설’이라는 점에서 당초 계획 단계에서 소방청이 동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고 보임⁴³⁾.

□ 소방청은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119항공정비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음.

43)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기본설계과정에서 법령 검토과정이 포함되긴 하나 전체 건축물 비용 추계에선 유사시설의 평당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평당 단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므로 결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미포함된 채로 사업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무적 사유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신재생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였다면, 사례가 없어 결국 다시 유사시설 평균단가로 추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2026년 하반기 이후 119항공정비실 상세 건립 일정(안)>

119 항공정비실 건립	구분		월 별 추 진 계 획(2026년)							
			2026.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공정물	목표	14.31	22.89	31.04	39.19	49.86	58.41	63.77	
		실제	14.03	22.66						
	건축 공정	격납고	골조공사 (철골기초)	철골공사		외장판넬	창호공사 골조공사 (바닥스래브) 우수배관	도장공사 1) 철골 내화도장 2) 벽면 스톤코트		
			골조공사 : 1F ~ 옥탑 슬래브 공사					옥상방수		
		행정동				외벽 단열재 붙임				
						창호 공사			외부유리	
						내벽 면처리	외벽 석공사, 외벽 판넬공사			
						조적공사(내부 칸막이, 외부 적벽돌)				
								내부 건식벽		
		토목		우수, 오수 배관매설		사토반출	주기장 ; 수로배관, 잡석포설			
		설비					기계실, 각종 천정 배관공사			
	구분		월 별 추 진 계 획(2027년)							
			202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공정물	목표	65.49	67.59	70.43	79.47	90.67	98.45	100		
	실제									
건축 공정	격납고						바닥마감 (에폭시P)	준공검사	BF검사 ⁴⁴⁾	
		행정동	내부건식벽		방수공사	바닥미장	천정마감			바닥마감
			내부창호		계단실마감	벽면도장	창호유리문짝			창호코킹
						석공사	난간설치			
	토목			경계석, 빗물받이		주기장포장	아스콘, 차선도색			
	설비	배관공사	물탱크설치	배관공사, 장비설치			시운전			
	조경				수목 식재, 보도블럭		울타리설치			

※ 자료 : 소방청

44) BF(Barrier Fre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로,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건축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이며, 예비인증(설계단계) → 본인증(준공 후 현장 확인)의 절차로 최종 인증이 완료됨

<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관련 총사업비 조정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변경					
	조정	조정금액			조정사유	주요내용
		현행	순증	조정후		
'24.12.	1차	32,058	6,143	38,201	공사비 증액	· 연약지반처리 : 지반조사 결과 높은 지하 수위로 인한 토목공법, 파일기초변경 · 물가변동 :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지수 반영 ⇒ 공사비 4,269 증
					감리비 증액	· 책임감리 지침요율 ⇒ 감리비 1,874 증
'25. 6.	2차	38,201	4,596	42,797	공사비 증액	·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비 1,549 증) :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의무비율 대상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반영 · 물가변동(공사비 32 증) : 건설공사비지수 129.61 ↔ GDP디플레이터 123.36 · 설계개선(공사비 695 감) : 조달청 설계도서 검토 반영 ⇒ 공사비 886 증
					설계비 증액	· 설계의도구현 용역비 반영 ⇒ 설계비 45 증
					감리비 증액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반영 ⇒ 감리비 1,130 증
					보상비 증액	· 확정조성원가 증가액 반영 ⇒ 보상비 2,535 증
'26. 1.	3차	42,797	△3,744	39,053	공사비 감액	· 공사계약 낙찰차액 ⇒ 공사비 △3,218
					설계비 감액	· 설계용역 집행잔액, 설계의도구현 낙찰차액 ⇒ 설계비 △102
					감리비 감액	·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감리 용역 낙찰차액 ⇒ 감리비 △424
'26. 5.	4차	39,053	△1,728	37,325	공사비 증액	·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가 ⇒ 공사비 45 증
					보상비 감액	·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 건설보상비 △1,773

※ 자료 : 소방청

다. 119항공정비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장비 확충 및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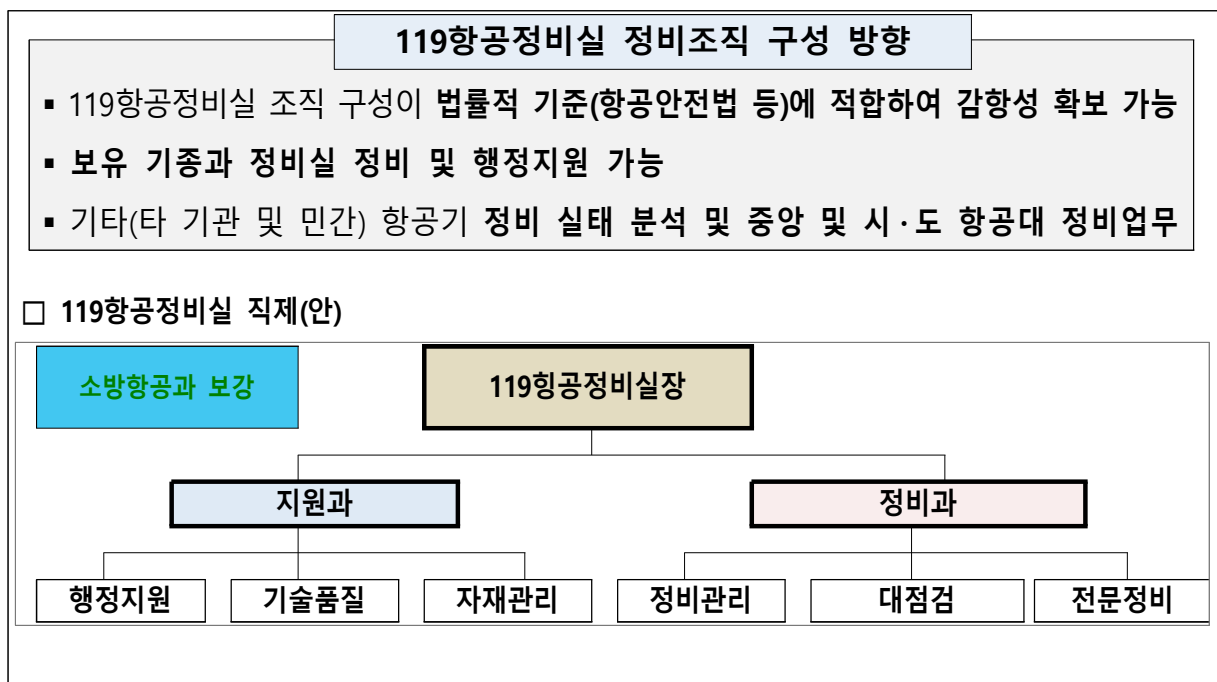
- 소방청의 계획대로 2027년 7월에 119항공정비실이 준공될 경우, 2027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소방헬기에 대한 통합정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119항공정비실 건립만으로는 소방헬기 통합정비 체계가 즉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며, 인력·장비·법적 기반 마련 및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야만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119항공정비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임.
 -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운영을 위하여 소방헬기 정비를 위한 신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필요 인력 충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항공정비 인력은 전문성과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채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인력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합정비 체계 구축 및 운영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전문인력 충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통합정비 체계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119항공정비실 인력 확충 계획(안) >



※ 자료 : 소방청

□ 둘째, 119항공정비실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소방헬기의 운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⁴⁵⁾,

45) 「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리·개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항성을 확인받기 곤란한 대한

현행 「항공안전법」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제작자만이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2조제2항),

‘국가기관등항공기⁴⁶⁾’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소방헬기⁴⁷⁾를

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6)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2021. 5. 18., 2023. 4. 18., 2024. 3. 19., 2025. 5. 27., 2025. 12. 30.>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7) 현재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은 소방헬기 8대를, 지방자치단체(소방본부)는 23대의 소방헬기를 소유하

소방청의 119항공정비실에서 정비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⁴⁸⁾.

- 또한,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또는 부품 등의 정비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제97조제1항), 소방청이 설치하는 119항공정비실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⁴⁹⁾.

□ 그 밖에, 119항공정비실 건립의 취지가 소방청 및 각 시·도의 소방항공대는 현장 임무 수행과 기본 관리를 담당하고, 중앙의 119항공정비실이 중정비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소방헬기 가동률을 높이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및 정비 위탁 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항공기에 대한 정비 일정 조정, 예산 분담, 운항 공백 최소화 등을 둘러싼 협력 체계가 원활히 구축되지 않을 경우 통합정비 체계의 실효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고 있음.

-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헬기 소유 현황은 [참고] 참조

48)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고자 할 때 「항공안전법」상의 상용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되,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준수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859호,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2026. 7. 9.)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임.

49) 소방청에 따르면 119항공정비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조직 인증을 취득하여야만 자체적으로 소방헬기에 대한 정비계획부터 정비, 출고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정비조직 인증을 취득하는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비는 소방청의 항공정비실이 수행하고, 정비확인인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항공대가 수행하여야 하는 이중적 구조가 되어 업무효율 및 정비 안전성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보임⁵⁰⁾.

한편, 119항공정비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비 확보 역시 필요한데,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개청 이후 연간 25~32대 정도의 소방헬기를 정비할 계획이고⁵¹⁾, 이를 위해서는 통합정비 운영프로그램 등 14종 19세트의 필수 장비의 확보가 필요하며 해당 장비 구매 등을 위해 2027년도에 약 26억원의 예산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2027년도 119항공정비실 운영비 편성 현황>

(2026. 8. 1. 현재)

계	일반운영비	정비공구 등
2,606백만원	123백만원	2,483백만원

※ 자료 : 소방청

50)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개청 전('27. 7월) 소방헬기 통합정비시스템 구축, 소방헬기 통합 정비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 기반 및 정비실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51) 소방청은 2027년도에는 개청 이후 6~8대의 소방헬기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2027년 119항공정비 일정(안)의 상세 내용은 [참고] 참조

<119항공정비실 필수 장비 목록(예시) >

구 분	수량	구매단가(천원)	구매가(천원)	비고
필수 정비용 inch 수공구	2set	83,988	167,976	정비 필수 수공구
필수 정비용 mm 수공구	2set	57,094	114,188	
필수 기체 수리용 수공구	2set	47,034	94,068	
항공기 배터리 분석/충전기	1set	47,078	47,078	항공 배터리
시동보조장비(엔진식)	1set	144,912	144,912	전원공급
전원공급장비(전기식)	1set	41,252	41,252	전원공급
정비 작업대(KUHC 용)	1set	169,461	169,461	항공기 점검
정비 작업대(AW139 용)	1set	354,173	354,173	항공기 점검
통합 정비 운영 프로그램	1set	450,000	450,000	
진동측정장비	1set	106,654	106,654	기체 점검
터빈오일 보급기	1set	7,040	7,040	터빈엔진용
터빈엔진 세척기	1set	36,240	36,240	터빈엔진용
질소 보급	1set	63,740	63,740	착륙장치 검사
항공기 잭(리프팅)	3set	22,330	66,990	항공기 점검
계			1,863,772	

※ 자료 : 소방청

□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은 시설 준공 자체보다 준공 이후 전국 소방헬기에 대한 통합정비 체계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운영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향후, 소방청은 인력 확보, 필수 장비 구축, 정비조직 인증 취득 및 관련 제도 정비, 중앙 - 지방 협력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여 통합정비 체계가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27년 하반기 119항공정비실 정비 계획(안)

(2026년 6월 조사자료)

소속		기종	2027년 계획	정비내용
◆EC225				
중앙	수도권(2호기)	EC225	2027년 7~8월	기체 4년/2800시간
◆S-92				
중앙	영남(2호기)	S-92	2027년 10월	12개월 검사
◆AW139				
강원	양양(1호기)	AW139	2027년 6~7월	기체 1년/300시간
부산	(2호기)	AW139	2027년 9~10월	기체 1년/300시간
인천	(2호기)	AW139	2027년 12월	기체 6개월 검사
	(3호기)	AW139	2027년 8~10월	기체 4년
전북	(1호기)	AW139	2027년 6~7월 2027년 11월	기체 6개월 검사 기체 150시간
전남	(1호기)	AW139	2027년 8월~10월	기체 6년
충남	(1호기)	AW139	2027년 6~7월	기체 2년/600시간
	(2호기)	AW139	2027년 8~9월	기체 2년/600시간
경기	(2호기)	AW139	2027년 7~9월	기체 2년/600시간
	(3호기)	AW139	2027년 10~12월	기체 2년/600시간
◆KUHC-1				
중앙	호남2호기	KUHC-1	2027년 9~10월	기체 1000시간

* 정비실 완공시기, 직제, 각 항공대 현장상황 등 119항공정비실 개청 상황을 고려하여 정비가능 항공기 선발 예정
※ 자료 : 소방청

[참고] 소방청 및 각 시도별 헬기 보유 현황

(2026. 5월 말 현재⁵²⁾)

구분	보유 대수	헬기 도입 시기	향후 헬기 구입/보급 계획			
			'25	'26	'27	28°후
소방청 (중구본)	8	'97(1), '99(1), '08(1), '20(2), '22(2), '23(1)		2(교체)		
서울	3	'97(1), '99(1), '18(1)			1(교체)	1(교체)
부산	2	'18(1), '24(1)				
대구	2	'05(1), '19(1)				1(교체)
인천	2	'13(1), '24(1)				
광주	1	'22				
대전	1(임차헬기)					
울산	1	'00				1(교체)
경기	2	'01(1), '10(1)		2(교체)		
강원	2	'09(1), '17(1)			1(신규)	
충북	1	'05				1(교체)
충남	1	'15		1(신규)		
전북	1	'22				
전남	1	'21				
경북	2	'06(1), '24(1)				
경남	1	'22				
제주	1	'18				
계	32					

※ 자료 : 소방청

52) 소방청은 2026년 7월부터는 소방헬기 34대를 운영 중임.
 1. 중앙119구조본부(충청·강원대) : 교체 2대 / 2026년 07월
 2. 경기 : 교체 1대, 신규 1대 / 2026년 06월
 3. 충남 : 신규 1대 / 2026년 04월
 (자료: 소방청)

4. 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

- 소방청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및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해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예산현액 21억 9,200만원 중 21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2022년 이후 분석 과제당 평균 활용 횟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2022년 9.6회 → 2024년 3.5회) 분석결과 활용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과제는 새로운 정책 수요 발굴보다는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확인하는 등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향후, 소방청은 현행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대해 과제 선정 기준, 활용성과 관리체계 및 정책 환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 검증에 그치는 과제보다는 새로운 정책 수요 발굴, 위험 예측, 자원 배분 최적화 등 빅데이터 분석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은 화재예방·구조·구급 등 주요 사회적 현안 및 재난 대비를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과학적 정책 수립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방분야 빅데이터의 분석·활용 및 데이터 거래·유통을 위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5년도에는 예산액 1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2억 8,500만원⁵³⁾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1억 9,200만원임. 이 중 99.5%인

53) 소방청은 2024년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위탁 운영사업’ 사업(예산: 11억원)의 용역 결과, 일부 과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여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2025년 1월에 용역 잔금을 지급하였음.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액 중 2억 8,50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집행되었음.

21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을 불용하였음(불용률 0.5%).

< 2025회계연도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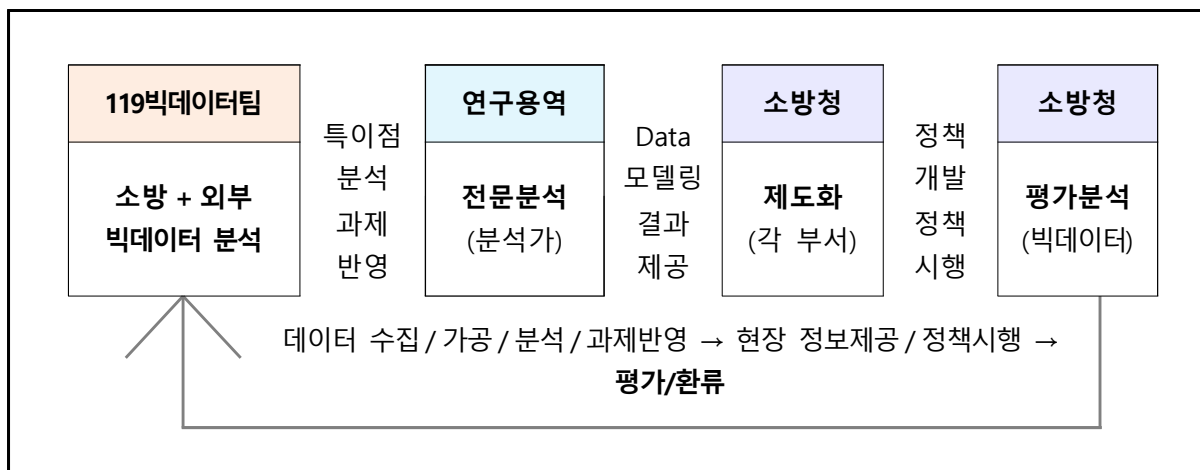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 이월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1,907	1,907	285	-	-	2,192	2,181	-	11	1,705
○ 119빅데이터 분석	690	690	-	-	-	690	690	-	-	400
○ 119빅데이터 운영	67	67	-	-	-	67	67	-	-	67
○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1,100	1,100	285	-	-	1,385	1,375	-	11	1,100
○ 시각화 SW 구매	50	50	-	-	-	50	50	-	-	138

※ 자료: 소방청

나. 119빅데이터 분석 : 분석결과 활용도 제고 및 과제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119 빅데이터 분석·운영」사업의 내역사업인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선제적인 정책수립 및 현장대응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재난안전 및 소방업무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소방 정책 개발과 시행에 활용하는 사업임.

<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체계 >



※ 자료 : 소방청

- 2025년도 동 사업 예산은 6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으며, 「화재조사 데이터 분석으로 발화열원 예측」 등 총 5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음.

< 2025년도 119 빅데이터 분석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목적)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 재난안전 및 소방업무 현안에 대해 과학적·선제적인 정책수립 및 현장대응 지원

※ 관련근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경과) 대내·외 수요조사 및 외부위원 심사를 통해 현안과제 5건 발굴

□ 사업개요

- (사업명) 119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기간/예산) 7개월 / 69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평가위임)
- (사업내용) 빅데이터 과제 분석, 분석결과 현행화, 시스템 개선
- (사업절차)

단 계	기 간	업 무
수요 조사	2024.9.~2024.10.	청·시도본부 대상 현안과제 접수
과제 선정	2024.11.~2024.12.	사전심의(소방청)→본심사(내·외부 평가위원)
사업계획 및 발주	2025.1.~2025.4.	사업계획 보고 및 과업심의, 일상감사, 계약의뢰
사업자 선정	2025.1.~2025.5.	사업계획 및 발주
사업 추진	2025.5.~2025.12.	과제별 수요제출처 및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업
분석결과 활용	2026.1.~2026.12.	빅데이터 포털 웹사이트에 게시된 분석결과를 청 및 시도본부에서 활용
집계	2027.1.	국민행복지표에 분석결과 활용 지표를 넣어 활용성과를 집계

□ 2025년도 분석 주요내용

-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5건)
- 기존 분석 결과물 현행화로 신뢰도 높은 분석 서비스 제공
- 119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안정적인 분석 환경 마련

※ 자료 : 소방청

< 연도별 119빅데이터 분석 상세 내역 >

연도	연번	분야	과제명
2021	1	화재	주택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안 도출 분석
	2	화재	빅데이터 기반 화재경계지구 타당성 및 위험 요인 분석
	3	화재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재 위험 요인 분석
	4	화재	산불, 화학물질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지점 도출
	5	구조	재난약자 다수 인명피해 지역분석
	6	생활안전	위험물유해물질취급소 및 생활안전 취약지구 분석
	7	대응	대형재난 발생시 전국 소방력동원 분석
	8	구급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분석
	9	구급	구급대원 출동 분석을 통한 업무하중 다차원 분석
2022	1	예방	비화재보 저감을 위한 감지기 오작동 원인 분석
	2	보건	현장대원 안전사고 요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
	3	대응	지역별 출동장애 요인 분석
	4	구조	구조활동 대응체계 효율화 방안 분석
	5	구급	주요 구급활동(이송) 현황 분석
	6	구급	구급서비스 품질보고체계 고도화 방안 분석
	7	언론	데이터에 기반한 언론브리핑 자료 분석
	8	대응	실시간 소방력 현황
2023	1	예방	살기좋은 우리동네 스마트 화재안전지수 개발
	2	조직	빅데이터 AI 기반 미래 소방수요 및 조직모형 예측모델 개발
	3	구조	기상에 따른 구조출동 데이터 상관분석 및 출동장소 시각화
	4	구급	구급DB기반 국가건강자료 연계 구급서비스 품질향상방안 분석
	5	화재	산림인접 산불취약지 대비·대응 정보체계 구축
2024	1	구급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119안전센터 구급차 적정 배치에 대한 연구
	2	교육훈련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직장훈련 데이터 분석
	3	구조	산악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다수 발생 지역 및 구조 지점 분석
	4	보건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다수 발생 질병) 수요 분석
	5	생활안전	주택용소방시설 인명·재산피해 저감 효과 분석
	6	신고접수	119 긴급신고 오접속/무응답 호 발생 분석
2025	1	화재	화재조사 데이터 분석으로 발화열원 예측
	2	구조	연안 고립사고 및 수색구조 지점 예측
	3	조직	소방 출동과 다양한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
	4	신고접수	기상 및 다양한 요인에 따른 신고 집중지역 예측
	5	예방	소방 민원 분석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

※ 자료 : 소방청

(1) 분석결과 활용감소에 따른 사업 효율성 저하

□ 동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19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 빅데이터 분석 예산은 2021년에 9억 4,000만원이 편성된 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6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과제 1건당 분석 예산액은 8,700만원 ~ 1억 3,800만원으로 나타남[(최고액) 2023년 1억 3,800만원, (최소액) 2025년 8,700만원]⁵⁴⁾.

< 연도별 119빅데이터 분석 개요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비고 ('26년)
분석과제(건)		총 33건	9	8	5	6	5	5
예산 (억원)	계	37	9.4	6.9	6.9	6.9	6.9	4
	·분석	34.47	9.4	6.9	6.9	6.9	4.37	2.1
	·시스템 개선	2.53	-	-	-	-	2.53	1.9
과제 1건당 예산(억원)		평균 1.1억원	1.04	1.16	1.38	1.15	0.87	0.7

※ 자료 : 소방청 제출자료 재가공

54) 2026년도 119빅데이터 분석 예산은 4억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중 시스템 개선 예산을 제외한 분석 예산은 2억 1,000만원이고, 과제 1건당 평균 예산액은 7,000만원임.

□ 소방청은 “최근 10년간 구조활동 기반 익수사고 빅데이터 분석 (2024년도 분석)”을 통해 시기별·지역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인명 구조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정책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전국 익수사고 사망 건수가 2023년 220건에서 2024년 151건으로 69건 (31.4%) 감소하는 등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 소방활동과 이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⁵⁵⁾.

□ 다만, 그 동안의 분석결과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투입 예산액 대비 사업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통상 분석 완료 다음 연도(n+1년)부터 약 3년간 정책 수립 및 현장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분석 완료 후 1~2년 차에 활용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분석 주제 1건당 평균 활용 횟수는 2022년 9.6회를 기록한 이후, 2023년 6.8회, 2024년 3.5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55) 119빅데이터 주요활용 성과는 [참고] 참조

< 연도별 119빅데이터 활용 현황⁵⁶⁾ >

구 분		2021 분석 (9건)	2022 분석 (8건)	2023 분석 (5건)	2024 분석 (6건)	계
활용	'21	2				2
	'22	4				4
	'23	18	52	1		71
	'24	2	12	24	2	40
	'25	0	13	8	17	38
	'26. 5월			1	2	3
	계	26	77	34	21	158
분석주제 1건당 활용율		2.9회	9.6회	6.8회	3.5회	

※ 2025년에 분석한 5개 과제는 2026년 이후에 활용 예정

※ 자료 : 소방청 제출자료 재가공

특히, 분석 완료 후 2년간(n+1년 및 n+2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 대비 활용도를 비교해 보면,

2022년도 분석의 경우 예산 1억원당 활용 건수가 9.27건이었던 반면,
2023년도 분석은 4.6건에 그쳐 전년 대비 약 44%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⁵⁷⁾⁵⁸⁾.

56) 각 과제별 활용 현황은 [참고] 참조

57) 동 자료는 3년 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실적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2024년도 분석 결과는 2025년과 2026년에 활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2025년도 분석 결과는 2026년과 2027년에 활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6년 6월 현재 2026년도 활용 실적은 집계할 수 없어 2023년도 분석까지만 살펴볼 수 밖에 없음.

58) 다만, 소방청은 2025년의 활용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2025년과 2026년의 과제 1건당 비용이 전년 대비 각각 76%, 61% 수준으로 감소하여 사업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투입 예산 대비 성과 효율성 비교: n+1년도 및 n+2년도 활용 현황 >

분석연도 (n)	투입예산 (A)	(n+1년) + (n+2년)		비고
		활용 건수(B)	예산 1억원당 활용도(B/A)	
2021년 분석	9.4억원	22건(4+18)	2.34건	
2022년 분석	6.9억원	64건(52+12)	9.27건	
2023년 분석	6.9억원	32건(24+8)	4.6건	

※ 자료 : 소방청 제출자료 재가공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은 분석 과제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분석 결과의 활용도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소방청은 과제 수행 실적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의 실제 활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빅데이터 분석 사업의 성과활용은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처럼 단순히 사용율(사용자수, 접속건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사례를 일일이 찾아서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집계된 활용 횟수만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향후 활용 성과와 정책 환류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2)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선정 및 활용 관리 필요

□ 소방청은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 목적을 “과학적·선제적인 소방 정책수립 및 현장대응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 과제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거나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의 효과를 재확인하거나 정책 홍보를 지원하는데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2025년도에 가장 많이 활용된⁵⁹⁾ 분석 주제중 하나인 “주택용소방시설 인명·재산피해 저감 효과 분석(2024년도 분석)”의 경우, 일부 시·도에서는 이를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다수 사례는 소방안전교육, 홍보 캠페인, 안전매뉴얼 제작·배포 등 기존 정책의 홍보 및 보급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59) 동 사업을 통해 분석된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2025년도에 총 22건 활용되었는데, 이 중 “주택용소방시설 인명·재산피해 저감 효과 분석” 결과는 총 5건 활용

< 2025년의 주택용소방시설 인명·재산피해 저감 효과 분석 활용 내용>

본부명	활용내용
A부산	○ 찾아가는 기초소방시설 지원센터 운영 - 소방, 의용소방대, 시니어클럽 현장방문(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부착 및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제작요령 컨설팅 병행
대구	○ 공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사각지대 우선 배부 - 달서 관내 주택 62,238가구* 중 48,976가구 보급, 설치율 79% ○ 시니어 소방안전지원단 협업을 통한 배부 및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등 - 화재 시 <u>초기 대응법 및 소방 안전 교육, 교육자료 배부</u>
광주	○ 단독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마련 - 화재 시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u>캠페인 실시</u> - 대피계획(서식) 제작·배포 및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u>홍보</u>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활용법 등 <u>안전매뉴얼 제작 및 보급</u> - 설 명절, 다중시설 캠페인 및 행정복지센터 등 매뉴얼 비치 안내 - 2026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시 안전매뉴얼 보급 병행 ○ 마을·경로당·기업체 등 대상 소방안전교육 활용 교육 ○ 불조심 강조의 달 집중 운영 - TV, 라디오, 언론보도 등을 통한 ‘<u>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u>’ 홍보 ○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 확보 - 주거취약시설 현장 행정지도 및 소화기 사용법 등 거주인 안전교육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관리) 상태 점검 및 화기 등 취급주의 안내
경기 북부	○ (설치율 향상 방안 마련) 대국민 <u>홍보 및 각종 시책 추진</u> -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방송, 언론 등)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조례 개정 등 시책 지원 ○ (성과측정) <u>주택화재 사망자 저감 효과 분석</u> - 분석자료 반영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수립
충북	○ ‘26년 아이돌봄 공백세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 (추진기간) ‘25.10. ~ 12.(3개월)(추진중) - (예 산 액) 금65,480천원 / 단독경보형감지기 8,190개 ○ 노후 공동주택 인근 초등학교 대상 <u>소방안전교육 추진</u> -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자료 : 소방청

○ 또한,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이미 2012년부터 화재안전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⁶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00만원의 국비를 편성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 중임⁶¹⁾.

이에 동 과제는 ‘과학적·선제적인 소방 정책수립’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6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61) 2025년도에 91억원, 2026년도에 63억원이 투입되는 등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예산 투입 규모는 축소되고 있음(2022년 126억 100만원 → 2024년 106억 5,500만원 → 2026년 63억 5,500만원).

< 2022년 이후 대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방시설 보급 (시도비)	12,601	12,593	10,655	9,122	6,355
소방시설 보급 홍보 (국비)	50	50	50	50	-
계	12,651	12,643	10,705	9,172	

※ 자료 : 소방청

< 2022년 이후 대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

(단위: 세대)

구 분	화재안전취약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급 세대	200,372	193,660	160,140	133,382

※ 자료 : 소방청

- 한편, 해당 분석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읍·면·동 단위까지 시각화하였으나, 화재 발생 위험 예측은 시·군·구 단위까지만 수행되어, 사업 대상 선정이나 자원 배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세부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소방청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자는 각 소방서가 시·군·구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등 법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더욱이 읍·면·동 단위 데이터 부족과 같은 한계는 과제 기획 및 선정 단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⁶²⁾, 해당 과제가 애초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선제적 정책 분석이라는 사업 목적에 적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방청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당 평균 연구비가 약 4,130만원 수준인 반면, 같은 기간 119빅데이터 분석과제의 과제당 평균 분석비는 약 1억 1,000만원으로 약 2.5배 높은 수준임. 이처럼 일반 정책연구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분석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 제도 신설, 현장 대응 체계 고도화 등으로 연계되는지를 보다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소방청 정책연구용역비 현황⁶³⁾ >

(단위: 천원, 건)

연 도	집행액	연구용역건수	연구용역 1건당 평균 금액	비 고
2021년	143,341	6	41,305	
2022년	202,432	5		
2023년	180,918	5		
2024년	189,406	4		
2025년	399,140	7		

※ 자료 : 소방청

62)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각 읍면동 내에는 예측분석을 할 만큼의 충분한 화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예측 분석이 불가능하였다고 언급함(보고서 123면).

63) 7031-302 정책연구개발 세부사업의 연구용역 현황임

- 향후, 소방청은 현행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대해 과제 선정 기준, 활용 성과 관리체계 및 정책 환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 검증에 그치는 과제보다는 새로운 정책 수요 발굴, 위험 예측, 자원 배분 최적화 등 빅데이터 분석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 연도별 과제별 119빅데이터 활용 현황 상세 내역⁶⁴⁾

□ 총괄표

구 분		2021 분석 (9건)	2022 분석 (8건)	2023 분석 (5건)	2024 분석 (6건)	계
활용	‘21	2				2
	‘22	4				4
	‘23	18	52	1		71
	‘24	2	12	24	2	40
	‘25	0	13	8	17	38
	‘26			1	2	3
	계	26	77	34	21	158
분석주제 1건당 활용율		2.9회	9.6회	6.8회	3.5회	

※ 2025년에 분석한 5개 과제는 2026년 이후에 활용 예정

□ 연도별 활용현황

- 2021년

연 번	분야	과제명	활용 현황(건수)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1	화재	주택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안 도출 분석		1	6	1		8
2	화재	빅데이터 기반 화재경계지구 타당성 및 위험 요인 분석		1	1			2
3	화재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재 위험 요인 분석			6			6
4	화재	산불, 화학물질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지점 도출	1					1
5	구조	재난약자 다수 인명피해 지역분석			1			1
6	생활 안전	위험물유해물질취급소 및 생활안전 취약지구 분석			4	1		5
7	대응	대형재난 발생시 전국 소방력동원 분석	1					1
8	구급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분석		1				1
9	구급	구급대원 출동 분석을 통한 업무하중 다차원 분석		1				1
계			2	4	18	2	0	26

64)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 재가공

- 2022년

연 번	분야	과제명	활용 현황(건수)				
			2022	2023	2024	2025	계
1	예방	비화재보 저감을 위한 감지기 오작동 원인 분석	-	5	3	2	10
2	보건	현장대원 안전사고 요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	-	11	4	6	21
3	대응	지역별 출동장애 요인 분석	-	11	2	3	16
4	구조	구조활동 대응체계 효율화 방안 분석	-	5			5
5	구급	주요 구급활동(이송) 현황 분석	-	4	1		5
6	구급	구급서비스 품질보고체계 고도화 방안 분석	-	7	1		8
7	언론	데이터에 기반한 언론브리핑 자료 분석	-	8	1	2	11
8	대응	실시간 소방력 현황	-	1			1
계			-	52	12	13	77

- 2023

연 번	분야	과제명	활용 현황(건수)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1	예방	살기좋은 우리동네 스마트 화재안전지수 개발	-		4	3		7
2	조직	빅데이터 AI 기반 미래 소방수요 및 조직모형 예측모델 개발	-		7			7
3	구조	기상에 따른 구조출동 데이터 상관분석 및 출동장소 시각화	-	1	5			6
4	구급	구급DB기반 국가건강자료 연계 구급서비스 품질향상방안 분석	-		4	1		5
5	화재	산림인접 산불취약지 대비·대응 정보체계 구축	-		4	4	1	9
계			-	1	24	8	1	34

- 2024

연 번	분야	과제명	활용 현황(건수)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1	구급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119안전센터 구급차 적정 배치에 대한 연구	-	-		1		1
2	교육 훈련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직장훈련 데이터 분석	-	-		2		2
3	구조	산악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다수 발생 지역 및 구조 지점 분석	-	-	1	6	2	9
4	보건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다수 발생 질병) 수요 분석	-	-		6		6
5	생활 안전	주택용소방시설 인명·재산피해 저감 효과 분석	-	-	1	1		2
6	신고 접수	119 긴급신고 오접속/무응답 호 발생 분석	-	-		1		1
계			-	-	2	17	2	21

[참고] 119빅데이터 분석 주요 분석 활용 성과

(자료: 소방청)

1. 구급 서비스 품질 보고체계 고도화 방안 분석 2022년 분석 / 2022.12.20. 결과보고	
분석 개요	○ 구급일지와 세부상황표 등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중증환자 및 상황실 업무의 품질관리 지표와 보고체계 고도화 방안을 분석
주요 결과	○ 기존 시도 단위에서 서·센터·대원 단위까지 세분화한 구급품질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5종의 시각화 대시보드를 구축 ○ LSTM-Autoencoder 기반으로 지역·시기별 4대 중증환자 수요를 예측하는 모델 개발
활용 실적	○ 수기로 처리하던 통계 과정을 자동화하여 품질지표 관리와 대시보드로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 체계 구축 ○ 2023년 급성심장정지 및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에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방향 설정과 현장 교육 자료로 활용 ○ 지역별 평균 이송시간을 분석하여 구급 공백지역을 확인하고 관서 배치·운영 근거로 활용했으며, 분류코드 불일치 등을 반영한 「데이터 확보 및 품질개선 방안」 수립에 활용
핵심 성과	구급품질관리 5종 대시보드와 자동화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도별 맞춤형 정책 수립

2. 구조활동 대응체계 효율화 방안 분석(펌프구조대) 2022년 분석 / 2023년 운영계획 반영	
분석 개요	○ 구조출동 도착시간과 출동 건수·구조 인원, 대원 자격·경력 자료를 분석하여 구조공백지역과 펌프구조대 추가 설치 수요 도출
주요 결과	○ 현장 도착시간이 20분 이상인 60개 읍·면·동을 구조공백 예상지역으로 도출하고, 주말과 오전 9시·오후 1시 전후의 도착시간 지연 경향을 확인했음. ○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수, 대원별 자격·경력 현황을 함께 분석하여 추가 설치지역과 인력 편성 기준을 제시
활용 실적	○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펌프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조공백 예상지역에 펌프구조대 1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66개소로 확대했음. ○ 지역별 도착시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웹 기반 「구조활동현황」 대시보드를 빅데이터 포털에 구축 ○ 사고 유형별 필수장비를 100% 배정하고 구조 경력 3년 이상 대원을 팀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장비·인력 편성 기준을 강화
핵심 성과	펌프구조대 평균 도착시간을 11분으로 단축했으며, 전체 출동의 약 31%를 본진 구조대 도착 전에 자체 처리하여 골든타임 확보

3. 구조출동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 빈발지역 발굴·개선 | 2023년 분석 / 2019~2022년 데이터 활용

분석 개요	○ 4년간 구조활동과 동원인력 자료를 분석하여 도로·하천·산악·공원 등 분야별 사고 빈발지역과 예방 우선지역 도출
주요 결과	○ 교통사고 출동 10건 이상 지역 등 사고 빈발지점을 선정하고, 인명피해 규모·발생확률·예방효과를 종합하여 위험지역 시각화 ○ 대원별 자격면허·교육훈련·인사정보를 연계하여 사고 유형에 적합한 구조 전문인력을 검색·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활용 실적	○ 총 346개소를 개선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자체·경찰 등과 협력해 켈러레인, 안전난간, 추락방지 울타리 등 예방시설 설치 ○ 사고위험이 높은 35개 지역의 위치정보를 T-map·네이버·카카오·현대오토에버 등 4개 내비게이션 업체에 등록하여 운전자에게 사전 음성안내를 제공 ○ 분석 결과를 보도자료와 국가안전대진단 등 관계사업에 연계하여 국민 홍보와 예방사업 예산 반영에 활용
핵심 성과	2020~2021년 개선지역의 연평균 출동 건수가 약 21%(901건), 인명피해가 50%(1,390명) 감소

4. 구급활동 폭행 현황 분석 | 2024년 분석 / 2015~2022년 데이터 활용

분석 개요	○ 8년간 축적된 구급대원 폭행 자료를 활용하여 발생 시간·장소, 가해자 상태 및 피해 대원 특성을 분석
주요 결과	○ 폭행이 야간에 집중되고 오후 10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7.4%가 주취 상태였음을 확인 ○ 도로상 585건과 구급차 안 464건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소방사·소방교와 20~30대 대원의 피해가 많고 남성 대원 피해 비율이 83.5%였음을 확인
활용 실적	○ 분석 결과를 구급대원 대상 폭행 예방·대응 교육과 훈련 강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및 주취 폭행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구급차 내부·환자 이송·현장 응급처치 장소의 폭행·방해 행위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폭행·협박 자체 처벌, 주취 감경 배제, 현장 제지권·면책 및 기관 차원의 피해대원 보호·법률지원 근거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활용
핵심 성과	폭행 대응을 개인 대원 중심에서 기관 차원의 예방·보호·법률지원 체계로 강화

5. 최근 10년간 구조활동 기반 익수사고 빅데이터 분석 | 2024년 분석 / 2014~2023년 데이터 활용

분석 개요	○ 10년간 구조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익수사고의 시기·원인·장소별 발생 특성과 기상특보의 영향 분석
주요 결과	○ 익수사고가 8월, 토·일요일, 오후 3시에 집중되고 주요 원인은 물놀이와 실족이며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 ○ 2020년 이후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익수사고 출동이 급증하는 경향을 확인하고 기상 상황과의 연관성을 분석
활용 실적	○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전국 익수사고 위험지도」를 2024년 8월부터 국민에게 공개하고 대국민 안전 홍보에 활용 ○ 시기별·지역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인명구조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
핵심 성과	관련 예방·홍보 정책을 추진했으며, 전국 익수사고 사망 건수는 2023년 220건에서 2024년 151건으로 69건(31.4%) 감소했음(출동 유형 '정상' 기준 183건에서 131건으로 감소)

5. 소방행정 정보화(정보화)(1150-506)

○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소방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관리하는 사업임. 소방청은 2025년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과정에서 감리비, 조달수수료, 심의 수당 등 필수 부대경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타 세부사업 예산을 전용하거나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하였음.

한편, 2025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소방민원 31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나, 2026년(1-5월)의 월평균 온라인 민원 증가율(18.3%)은 예년 평균 증가 추세(13.7%)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해당 사업이 가져온 실질적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향후, 소방청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수 부대경비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고 예산 집행의 절차를 준수하며, 온라인 민원 전환율 및 처리 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이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소방행정 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소방청 전산실의 시설장비를 유지·운영하고, 내·외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사이버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보안관제시스템을 위탁운영하며,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2025년도에는 예산액 15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용을 통해 증액한 4,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억 500만원인데, 이 중 15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99.1%)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불용률 0.9%).

< 2025회계연도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 이월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방행정 정보화	1,563	1,563	-	42	-	1,605	1,591	-	14	1,325
-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170	170	-		-	170	158		12	220
-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124	124				124	124		-	460
-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위탁운영	645	645	-	-	-	645	645	-	-	645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624	624	-	42	-	666	664	-	2	-

※ 자료: 소방청

나.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내역사업

□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계되면, 자체점검 결과 등 소방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2022년 ~ 2024년까지 3년간 총 33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되었음.

- 2025년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허가 동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신고, 위험물제조소 허가 등 기존에는 소방서·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했던 소방민원 31종⁶⁵⁾을 온라인 상에서

65)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환한 소방민원 31종 목록

: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개요 >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목 적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계도면, 자체점검 결과 등 소방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관리
구축·운영 주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이 구축하고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에서 이용 중
주요 수록 정보	① 특정소방대상물 설계도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② 자체점검 결과(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 ③ 소방활동 정보카드(건축물 구조·위치,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 정보 등) ④ 그 밖에 소방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주요 연혁	• 2006년 ~ 2008년 : 소방민원정보시스템(내부용) 최초 구축 • 2016년: 대국민 온라인 '소방민원센터(소민터)' 오픈 • 2021년 ~ 2023년 : 클라우드 기반 통합구축 사업 추진(1차, 2차) • 2024년 1월 : 표준 '소방예방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개시 - 기존의 소방민원센터와 소방기술민원센터 등을 온라인 민원포털로 전산화 및 통합 • 2024년 5월 : DB암호화 제품등 보안 상용SW 구매 • 2025년 : 민원 30종 추가 및 기능 개선

※ 자료 : 소방청

임 이력 확인서, 소방안전교육 이수 증명서, 소방안전교육 재발급신청서,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조소 일반점검표, 일반취급소 일반점검표,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옥외저장소 일반점검표, 암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이송취급소 일반점검표, 옥내 소화전설비 일반점검표, 옥외 소화전설비 일반점검표, 물분무소화설비 일반점검표, 스프링클러설비 일반점검표, 포소화설비 일반점검표,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일반점검표,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일반점검표, 분말소화설비 일반점검표,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	이월액	비 고
2022	1,000 (일반연구비)	-	1,000	996(4)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1차)
	391 (자산취득비)	-	392	386(6)	-	
2023	975 (일반연구비)	-	975	964(11)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2차)
	314 (자산취득비)	-	314	314(0)	-	
2024	700 (자산취득비)	-	700	700(0)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3차) 상용SW 구매
2025	624 (일반연구비)	42	666	664(2)	-	소방예방정보 기능 고도화

※ 자료 : 소방청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성도 >



<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및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기능 구축 내용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2년 (1차)	○ 시·도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통합개발 - 민원접수관리/대상물관리/시스템 관리 ○ 내·외부 정보시스템 연계 - 내부시스템(긴급구조표준 등)/외부시스템(국토부세움터 등)	1,392	1,392	1,382	99.2
2023년 (2차)	○ 시·도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통합개발 - 조사·점검/위법사항관리/소방자격 업체관리/예방·통계 ○ 온라인 소방민원 통합 포털 구축 - 소방민원센터/소방기술민원센터/온라인 민원 13종 신설 ○ 내·외부 연계 확산·고도화 - 소방안전정보시스템/화재안전정보조사/기술자격취득시스템 ○ 시·도 소방민원DB통합 이관 구축	1,289	1,289	1,278	99.1
2024년 (3차)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상용 SW 구매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DB보안, 연계서버(ESB엔진), UI Tool - 소방민원포털: DB보안, 리포팅 Tool, UI Tool, 사용자인증(법인인증)	700	700	700	100
2025년 (고도화)	○ 온라인 민원 31종 추가 및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연계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간편화 ○ 소방안전정보 DW 연계 등	624	666	664	99.6
계		4,005	4,047	4,024	99.4

※ 자료 : 소방청

(1) 부적정한 예산 편성과 이에 따른 전용 및 타 세부사업 예산 집행 부적절

- 2025년도 동 내역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은 6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용을 통해 증액한 4,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억 6,600만원이고, 이 중 6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집행률 99.6%).
- 2025년도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일반연구비만 6억 2,400만원 계상되어 있을 뿐, 시스템 고도화(정보화) 사업에 따르는 감리비, 조달수수료, 각종 심의 수당 등은 독립적으로 편성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소방청은 감리비는 소방정보시스템⁶⁶⁾ 구축 세부사업 (1150-500)의 관리용역비 낙찰 차액 중 4,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각종 심의 수당과 조달수수료는 빅데이터 분석운영 세부사업 (1133-311)이나 화재예방국 기본경비(7011-255)에 편성된 수용비를 재원으로 집행하였음.

66) 소방정보시스템: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소방정보시스템(21종)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한 시스템 품질개선 등 최적화된 현장정보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자료: 소방청)

< 2025년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편성액	집행액	예산지변과목	비고
연구용역비	624,000	624,000	1150-506-260-01 (소방행정정보화-일반연구비)	
감리비	-	39,990	1150-506-260-01 (소방행정정보화-일반연구비)	전용을 통한 예산 확보
조달수수료	-	4,446	7011-255-210-01 (화재예방국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사업심의 수당	-	600	1133-311-210-01 (빅데이터 분석운영- 일반수용비)	
사업 기술평가위원 수당	-	1,750	7011-255-210-01 (화재예방국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감리비 심의 수당	-	600	1133-311-210-01 (빅데이터 분석운영- 일반수용비)	
감리 기술평가위원 수당 ⁶⁷⁾	-	1,400	7011-255-210-01 (화재예방국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자료 : 소방청

67) 심의수당은 빅데이터분석 세부사업에서 집행, 평가위원 수당은 국 기본경비로 집행하였음.

1) 과업심의 수당

- 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 주요내용 : 사업 발주전 과업의 적정성 평가(과업내용, 계약금액 등) 수당

2) 평가위원수당

- 근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15조
- 주요내용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 수당

- ① (기술평가위원수당) 사업 발주 후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② (적합성평가 수당) 단일 응찰시 해당 사업에 적합 여부 판단

<2025년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감리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28.)	소방정보시스템 구축(500)	210-15	42	소방행정정보화 (506)	260-01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감리비 재원마련

※ 자료 : 소방청

□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일반연구비(260-01목)는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수수료와 심사위원 수당 등 부대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⁶⁸⁾, 2025년도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 편성 시 동사업의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부대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고도화 사업 계약 금액이 예산액의 100.0%인 6억 2,4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전용 등을 통해 감리비 및 수수료, 심사위원 수당 등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 2025년도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계약 개요 >

- 계약 방식 :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 응찰 업체 수 : 3개사 (1·2순위 100%, 3순위 90.9%)
- 계약금액 : 6억 2,400만원
- 계약기간 : 2025년 6월 23일 ~ 12월 31일

※ 자료 : 소방청

68)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87면.

□ 그러나, 소방청은 동 사업의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감리비, 조달청 수수료, 기술평가위원 수당 및 사업심의 수당 등은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연구용역비만 편성하였음.

- 둘째, 소방청은 동 사업의 계약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⁶⁹⁾을 채택하였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능력평가 결과가 낙찰자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며, 소방청은 조달청에 제안서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을 요청하였는 바⁷⁰⁾, 이 경우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예정가격에 근접한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낙찰차액이 충분히 발생하지

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 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1., 2019. 9. 17., 2021. 7. 6.>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7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의 4.(제안서의 평가)에 따른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⑩ 수요기관의 장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조달요청시 명시하여야 한다.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감리비 등 필수 부대경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 계약 의뢰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 규모를 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충당하였음.

- 셋째, 소방청은 동 사업의 심의·평가 수당을 집행하면서 예산 전용 또는 과목 조정 등 필요한 절차⁷¹⁾를 거치지 아니하고 「빅데이터 분석운영」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 및 화재예방국 기본경비를 재원으로 집행하였음.

이는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⁷²⁾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향후 소방청은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감리비, 조달 수수료 및 각종 심의·평가 수당 등 필수 부대경비를 면밀히 산정

71)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동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20. 6. 9., 2025. 10. 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7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조달방식에 따른 낙찰 규모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대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세부사업 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전용 등 적절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성과 확인 필요

- 소방청은 2025년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존에는 소방서·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했던 소방민원 중 소방시설 감리계획서 등 31종⁷³⁾을 온라인 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21년 이후 온라인 소방민원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5월 31일 현재
온라인 민원	81,131	99,655	128,593	125,749	105,422 (국정자원 화재로 통계누락 2개월)	62,359

* 참고로 기존의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실적은 전국적으로 집계된 통계자료가 없음⁷⁴⁾.

※ 자료 : 소방청

73)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환한 소방민원 31종 목록은 각주 70) 참조

74)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오프라인 민원 건수가 통합 집계되지 않는 것은 전국 소방서가 민원을 개별 접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정확한 오프라인 민원 건수는 아니지만, 온라인화 대상 민원과 직접 연관된 규제 대상 서식의 상당수가 의무 제출·정기 신고 사항이므로 대상 시설·인원 수가 곧 연간 처리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2025년 소방예방행정 통계 등 현황> *2024.12.31. 기준

[총 1,215,535건, 명]

- 전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건수 : 20,936건, 방염성능검사 현황 : 4,936건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적 : 463,838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407,965명, 소방안전교육 실무교육 수료 : 253,411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재발급 : 12,211건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 52,238명,
- * 위험물 시설 현황(주유취급소 : 14,612개소, 옥외탱크저장소 : 29,249개소, 일반취급소 : 8,695개소, 옥내저장소 : 8,568개소 등)

<2021년 이후 소방민원: 연도별 1개월 평균값>

(단위: 건,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5.31.현재)	비고
온라인민원 1개월 평균 건수	6,760.9	8,304.6	10,716.1	10,479.1	10,542.2 ⁷⁵⁾	12,471.8	
온라인민원 1개월 평균 건수 증감율		22.8	29.0	△2.2	0.6	18.3	13.7

※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 재가공

- 기존에는 전국 228개 소방서가 민원을 개별적으로 접수·처리함에 따라 창구 업무 부담이 크고, 접수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행정 효율성 제고와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민원인 입장에서도 다수의 법정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발생하였음⁷⁶⁾.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존에 소방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했던 각종 소방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편의성 제고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2026년도 온라인 민원 처리 건수는 2025년도에 비하여 증가

75) 국정자원 화재로 통계가 누락된 2개월 분을 감안하여 $105,422 \div 10$ 개월로 계산하였음.

76)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17년 7월)에 따라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하여, 각 시도에서 개별 운영·관리되던 예방 관련 시스템(민원, 다중이용업소 관리 등)을 통합하고자 정보전략계획(ISP)사업(2018년)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도 담당자 의견수렴 결과 온라인 민원포털 구축 필요 의견이 71%, 시스템 통합 요구가 85%로 나타났고, 민원인의 온라인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하였으나(온라인 민원 월평균 처리 건수: 2025년 10,542건 → 2026년 12,472건, 18.3% 증가), 이는 2021년 이후 온라인 민원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추세(2021년 이후 월평균 증가율 13.7%)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우며⁷⁷⁾, 신규로 추가된 31종 민원에 대한 온라인 이용 처리 건수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⁷⁸⁾.

따라서 현재의 통계만으로는 2025년도에 추진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온라인 민원 처리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 사업이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2025년도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를 창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소방청은 온라인화 대상 민원별 처리 실적을 관리하고, 온라인 민원 처리 방식이 정책 수혜자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동 사업의 정책효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용자 만족도,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77) 다만, 온라인 소방민원 처리 건수는 2025년의 경우 국정자원 화재로 온라인 민원 처리가 불가능했던 2개월간의 처리 수요가 인접 월 및 2026년으로 이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2026년도 온라인 소방민원 처리 건수 역시 법정 신고기한에 따른 계절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78) 소방청은 온라인 민원 총량만 집계하고 있어, 동 사업으로 신규 전환된 31종의 개별 이용 실적은 확인되지 않음

6.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1150-511)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되고 분산된 119구급 활동 시스템을 정부 주도의 G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하고 구급활동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사업(2022~2026)인데, 그 중 2025년도 사업은 주 서버가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발생으로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1월에서 2026년 7월로 연기되면서 2025년도 예산의 10.0%(1억 5,600만원)만 집행되었음. 한편,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효과적으로 이송하고자 개발한 ‘이송병원 선정기능’의 의료기관 응답률이 48.0%에 불과하여 현장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소방청은 이월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후속 고도화 사업과의 연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의 연쇄 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노후화되고 분산된 119구급활동 시스템을 정부 주도의 G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하여 시·도 소방본부부터 소방청까지 구급활동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현장대응 및 구급활동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에는 예산액 15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10.0%인 1억 5,600원을 집행하고 13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이월률 87.6%)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불용률 2.4%).

< 2025회계연도 119구급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 이월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19구급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1,556	1,556	-	-	-	1,556	156	1,363	37	1,090
-일반연구비(260-01)	1,044	1,044				1,044	37	977	31	650
-자산취득비(430-01)	512	512				512	119	386	6	440

※ 자료: 소방청

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집행 부진 및 대규모 이월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2년~ 2026년
까지의 5개년도 사업으로 총 81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 동안의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 2022년에는 13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구급활동 정보
시스템⁷⁹⁾과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⁸⁰⁾을 구축하였고,
2023년에는 24억 9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구급단말기, 다수
사상자관리시스템⁸¹⁾, 국가긴급이송정보망⁸²⁾을 구축하였으며,

79) 구급활동 정보시스템은 구급활동일지 기록과 저장 및 결재, 구급활동에 대한 기본 통계 확인, 기록을 통한 구급활동 품질관리, 구급증명서 발급 및 구급대원 정보 운영·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임.

80)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은 외부 의료기관(병원)전용 시스템으로, 현장 구급대원의 환자 수용 요청에 대해 실시간 수용 여부를 회신하고, 구급활동일지 조회 및 평가, 감염병 확진 환자의 구급대원 사후 통보 기능 등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응급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임.

81) 다수사상자관리시스템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시, 현장 구급대원과 구급상황관리센터, 유관기관(DMAT, 보건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이송병원 현황 등 모든 사상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임.

2024년에는 16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구급상황관리시스템⁸³⁾과 119안심콜 시스템⁸⁴⁾을 구축하였음.

< 119구급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 체계도 >



※ 자료: 소방청

82) 국가긴급이송정보망은 전국 소방본부의 긴급이송정보와 자원정보(재난정보, 차량 및 헬기 위치, 구급활동 정보 등)를 연계하여 수집 및 관리하고 재난관리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임(구급단말기,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 등 기능 포함).

다만, 국가긴급이송망은 시도 소방의 119신고출동과 관련한 재난정보를 중앙행정기관(행안부, 소방청) 등에 이송하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재난관련 시스템과 연계되어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연계망으로 연계DB만 구축되어 있고, 사용자의 정보조회성 기능은 없고 관리자가 연계솔루션 모니터링 화면을 이용하기에 구급활동과 관련한 가시적인 기능은 없어 < 119구급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 체계도>에는 도식화되지 않았음.

83) 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 의사 및 구급상황관리사의 의료상담 및 지도내용, 구급대 이송병원선정 지원 내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임.

84) 119안심콜시스템은 일반 국민(구급취약계층 위주)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저질환, 복용 약물, 보호자 정보, 취약요소 등)를 사전에 등록해두면, 119 신고접수 시 신고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구급출동 지령서에 표출, 환자 상황에 맞는 적합하고 효과적인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임.

□ 2025년도에는 효율적인 119 구급 데이터 조화·관리를 위하여 기존 시스템⁸⁵⁾의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고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구급 데이터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Pre-KTAS⁸⁶⁾ 모바일 앱(App)⁸⁷⁾을 개발하는 등 2025년도와 2026년도에 걸쳐 사용자(구급대원 및 의료기관) 중심의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음⁸⁸⁾.

85) - 노후화로 인한 재구축 대상 (4종)

: U119(안심콜)시스템('07),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09), 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12), 국가긴급이송정보망('13)

- 시·도 분산 운영으로 인한 통합 대상 (2종)

: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09), 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12)

(자료: 소방청)

86) - KTAS(Korean Triage & Acuity Scale, 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도구)

: 응급실 내원 환자의 긴급도와 중증도를 표준화하여 분류, 병원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2년 개발, 2013~2015년 시범운영, 2016년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 공식 도입 & 의무화

- Pre-KTAS(Pre-Hospital Korean Triage & Acuity Scale, 병원 전 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도구)

: 119구급대원이 '병원 전 단계'(구급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와 긴급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 도구. 기존에는 구급 현장과 의료기관의 환자 분류 기준이 달라, 중증 환자, 특히 질환자 등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를 병원과 동일한 체계로 일치시켜 응급 의료 체계 내 의사소통의 혼선을 막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임.

87) Pre-KTAS 모바일 앱(App)은 구급업무용 휴대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어플로, 어플을 활용하여 중증도 분류가 끝나면 QR을 통해 구급단말기로 환자정보를 연계가 가능함. 소방청은 4차 사업이 26년 7월에 완료됨에 따라 8월 10일부터 정상배포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88) 소방청은 2025년 사업에는 배후진료과 의사도 시스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 사용자 화면을 개선하였고, 2026년도에는 메신저 기능 개발 및 의료진 사용 편의를 위한 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및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시스템명	기능 구축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2년 (1차)	구급활동정보 시스템	구급대 구급활동일지 작성, 관련 통계 기능 구축	1,403	1,382	98.5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의료기관 구급활동일지 확인, 이송 병원 선정, 감염병 통보			
2023년 (2차)	구급단말기	구급대 현장 출동 및 환자 정보 입력	2,449	2,409	98.4
	다수사상자관리 시스템	구급대, 구급상황관리 다수사상자 재난현장 상황 대응			
	국가긴급이송정보망	타부처(기관) 119접수 재난 정보 등 부처간 연계			
2024년 (3차)	구급상황관리 시스템	구급상황관리 의료자일지 작성 구급상담 실적 조회 및 통계 처리	1,677	1,619	96.5
	119안심콜	대국민 안전취약계층 사전 정보 등록 및 출동대 활용			
2025년 (4차)	구급과거데이터조회(백업) 시스템	구급대 과거 구급활동일지 조회 및 통계 기반구축, 백업 기능, Pre-Ktas 모바일 앱 개발 등	1,556	156	10.0
2026년 (5차)	기능 고도화 (자원 증설)	사용자(구급대원 및 의료기관)중심의 기능개선 고도화, 메신저 기능 개발	1,090	-	-
계			8,175		

※ 자료 : 소방청

□ 다만, 동 사업은 2025년도에 편성된 15억 5,600만원의 예산 중 1억 5,6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이 10.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의 서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되어 있고 동 사업은 소방청의 자체 개발 결과물을 대전에 소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서버에 연계한 후 기능 점검 및 보안 확인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완료되는 구조인데,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에 시간이 소요되어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이 당초 계획했던 2026년 1월에서 2026년 7월로 연기되었다고 설명함.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 2025년도 비목별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

(단위: 천원)

예산	세부항목	예산	계약금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일반연구비 (260-01) (1,044)	개발비	981,300	961,700	-	961,700	17,803	낙찰률 : 제안금액 의 98%
	감리비	62,700	49,600	34,720	14,880	13,100	낙찰률 : 제안금액 의 80% / 선금 70% 지급
	조달 수수료	-	1,797	1,797	-	-	-
자산취득비 (430-01) (512)	상용SW 구매	116,000	119,680	119,680		6,320	-
	국자원 위임발주	396,000	386,000	-	386,000		-
합계		1,556,000	1,518,777	156,197	1,362,580	37,223	-

※ 자료 : 소방청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 2025년도 사업추진 경과 >

구 분	세부내용	공고	계약기간	변경계약기간 89)	계약형태
일반연구비	개발용역	'25. 4. 24. ~ 5. 20.	'25. 6. 13 ~ '26. 1. 9.	<u>~'26. 7. 31.</u>	제한경쟁 → 수의계약*
	감리용역	'25. 7. 30. ~ 8. 12.	'25. 8. 28 ~ '26. 1. 9.		제한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자산취득비	위임발주 (국자원)	'25. 7. 15. ~ 8. 19.	'25. 9. 24 ~ '26. 12. 12.	<u>~'26. 6. 11.</u>	국자원 위임발주
	직접구매 (상용 SW)	-	'25. 4. 16. ~ '25. 5. 16.	-	3자단가 계약

※ 자료 : 소방청

89) 소방청은 일정에 따라 개발용역 및 소프트웨어 구매·검수·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함.

□ 2025년 9월 26일 이후 중단되었던 2025년도 사업이 2026년 5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등 사업의 지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2025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추진되는 2026년도 고도화 사업 또한 2026년 하반기에 착수될 예정인 만큼, 더 이상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향후 소방청은 지연된 2025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후속 고도화 사업과의 연계 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기관의 장애나 재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절차와 일정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위험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 2026년도 추진현황 >

□ 2025년도 계획 사업의 2026년도 추진 현황

- '26. 5. 1. : 국자원 위임발주 사업 및 소방청 자체개발 사업 재개
- '26. 6월중 : 국자원 백업시스템 구축 및 소방청 자체개발 완료 예정
- '26. 7월 : 백업시스템-스마트시스템 간 연계, 기능점검, 보안 확인 등 검사·검수 및 완수

□ 2026년도 계획 사업 추진 일정

- '26. 3월 : 119구급스마트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 보안성 검토(소방청 정보통신과), 사전 협의(행정안전부)
- '26. 4월 : 과업심의(조달청), 일상감사(소방청 감사담당관실)
- '26. 5월 : 계약 의뢰(소방청 운영지원과)
- '26. 6. 22. ~ 7. 21. :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26. 7월말 계약 체결 및 8월 착수 보고회
- '26. 12월 : 사업완료 예정

※ 자료 : 소방청

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소방청은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부로 ‘이송병원 선정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가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에 도착해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함께 이송할 의료기관을 찾은 후 현장을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체류시간이 2019년에는 평균 7분 12초였으나, 2019년 대비 2025년에는 평균 13분 6초로 5분 54초 증가하였음.

< 119구급대의 현장 체류 시간 현황 >

연 도	출동건수 (건)	이송건수 (건)	현장도착-현장출 발 평균시간	현장출발-병원도착 평균시간	비 고
2019	2,929,994	1,825,987	7분 12초	12분 32초	코로나 팬데믹 발발
2020	2,766,136	1,594,390	8분 54초	14분 20초	
2021	3,148,956	1,775,395	9분 40초	17분 3초	
2022	3,564,720	1,969,375	10분 46초	16분 22초	코 로 나 팬 데 믹 최 고 점
2023	3,486,526	1,995,982	9분 34초	14분 12초	
2024	3,324,287	1,790,794	11분 34초	14분 37초	전공의 사직('24.2)
2025	3,285,375	1,732,889	13분 06초	16분 55초	

※ 자료 : 소방청

119구급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⁹⁰⁾에 따라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의

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자의 연령, 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을 말한다)
3.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 도착 예정 시각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

구두(전화) 확인 방식은 구급 현장에서 환자 처치와 병행하기 어렵고 여러 병원에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은 다수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와 수용 능력 문의를 동시에 전송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용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는 ‘이송병원 선정기능’을 2023년부터 개발하여 2024년 2월에 모든 응급의료시설에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과 2026년 2개년에 걸쳐 사용자(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 경험(UX) 기반의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중 '이송병원 선정기능' 개요 >

□ 이송병원 선정기능 개요

- 119구급대가 직접 전화로 연락하지 않고 이송환자 정보와 수용의뢰를 다수의 의료기관에 동시에 전송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수용 또는 불수용을 회신하는 시스템



□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Pre-KTAS: 값, 내용, - 신고접수, 환자이송통보일시
- 의식상태, 나이, 성별, - 구급대연락처, 환자발생 주소, - 활력징후
- 기타 추가정보(구급대원이 직접 입력): '보호자 유무', '병력', '다니는 병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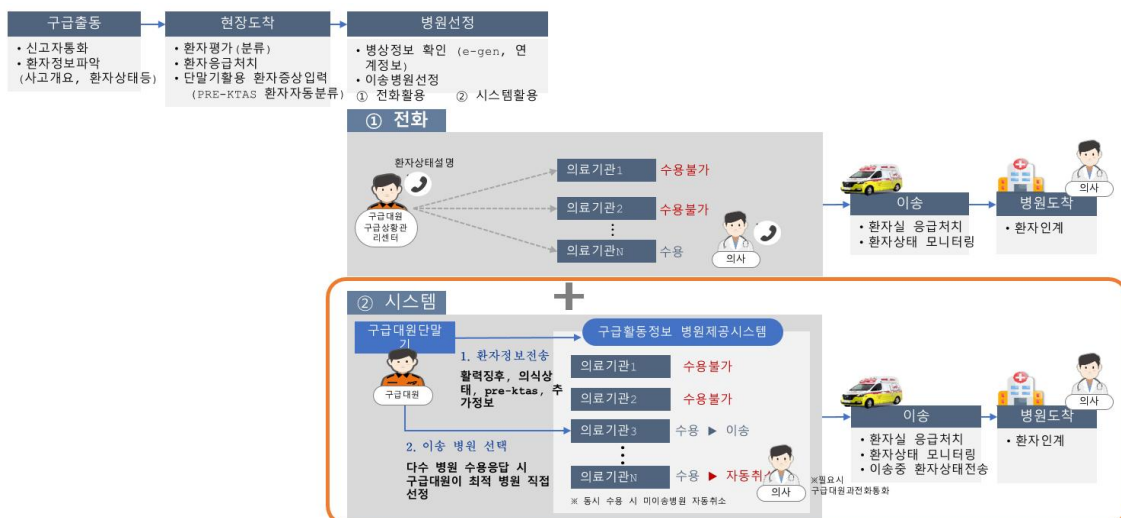
※ 병원응답: 환자상태확인(수용가능), 수용곤란고지(수용불가) 및 사유

- 시스템 운용 성과

<전북소방본부 활용 사례 분석> '24.4~6월, '25.4~6월 동기간 비교

- ◆ (이송시간) 21.1분 → 18.5분(2분 36초 감소, 12.32%↓)
- ◆ (일평균 1시간 이송 지연건수) 4건 → 3.06건으로 0.94건 감소(23.5%↓)
- ◆ (일평균 재이송건수) 0.89건 → 0.57건으로 0.32건 감소(35.96%↓)

□ 시스템을 활용한 이송병원 선정 과정



※ 자료: 소방청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중 UX기반 시스템 개선 내역 >

(기준일 : 2026. 7. 31)

연도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의 경험 중심(UX) 시스템 개선 내용
2025 (4차)	'25년 구축 완료 예정이었으나, 25년 10월 대전 국자원 화재로 인해 사업 중단 (26년 5월 재개 예정)
	○ 이송병원 선정 상황판 ⇒ 개선 완료 - 요청구분 내에 '병원', '구상', '구상/광역' 로직 추가 - 알람 표시 조건 관련, Pre-KTAS 1,2 환자 모두 팝업 알람 요청 - 알람 표시 조건 관련, 5분 경과 후 '이송 지연 요청' 알람 요청 - 병원 선정 상세정보 내, 환자 발생 위치 추가 ○ 이송병원 선정 기능 ⇒ 개선 완료 - 이송병원 선정 요청 후 취소·수정 기능 추가 - "추가정보" 표준화 후 입력방법 개선(과거력, 보호자 유·무 등)
2026 (5차)	'26년 7월 사업 시작 예정
	○ 병원정보제공시스템 내 이송병원선정 메신저 기능 - 폴링 형식 메신저 기능 활용(메시지 관리, 그룹 생성, 수신 등) -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mcms) 내에 동일 기능 추가 ○ 이송병원 상황판 팝업 관련 오류사항 ○ ECN 발급 관련 미출력 남아있을 시 오류 ○ 권역외상센터 병원의 경우 병원 정보 이원화 필요 ○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mcms) 내 로그인 정보 표출 필요

※ 자료 : 소방청

- 동 시스템은 전북소방본부 시범 운영 결과 이송시간 감소, 장시간 이송 지연 감소 및 재이송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음.

그런데, 동 시스템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전국 응급의료시설에 모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병원 이송요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동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비율은 2024년 49.4%, 2025년 48.0%로 의료기관 응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송병원 선정 요청에 대한 의료기관 응답률 >

□ 시스템 가입률

(단위 : 개소)

구 분	계	권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대상	527	44	137	235	111
가입 (가입율)	527 (100%)	44 (100%)	137 (100%)	235 (100%)	111 (100%)

□ 시스템 활용률

구분	종별	선정 요청(건)[A]	응답 건수[B]	응답률*(%)[B/A]
2024	소계	349,414	172,719	49.43
	권역응급의료센터	62,896	35,598	56.6
	지역응급의료센터	135,999	60,216	44.28
	지역응급의료기관	150,519	76,905	51.09
2025	소계	563,521	270,244	47.96
	권역응급의료센터	90,883	45,529	50.1
	지역응급의료센터	269,911	124,951	46.29
	지역응급의료기관	202,727	99,764	49.21

* 구급대원의 병원 이송요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실제로 응답한 비율

※ 자료 : 소방청

- 소방청이 2025년 9월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환자 정보 확인(33%), 수용 여부 입력(19%) 단계에서 높은 피로도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응답 저해 요인으로 인력 부족(29%)과 타 업무 우선(25%) 등이

지목되었음⁹¹⁾).

- 이에,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의 이송병원 선정 기능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송병원 선정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2026년 5월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의3)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하여야 하고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담당부서 또는 담당인력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는 바⁹²⁾,

91) 이송병원 선정기능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상세내역은 [참고] 참조

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운영,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시행일: 2026. 5. 12.] 제48조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운영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이 조에서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24시간 상시 수신 및 발신이 가능할 것

2. 송신인의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할 것

3.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 외의 목적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

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 통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가.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

나. 수용능력 확인 대상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 활력징후 등에 관한 정보

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향후 이송병원 선정 요청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체계가 보다 체계화되고 시스템 회신을 위한 인력 여건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임⁹³⁾.

또한, 소방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8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기반의 구급상황 통합 관리·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개발 사업⁹⁴⁾’을 추진 중이므로, 향후 119구급대원의 환자 평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정보 확인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원 선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둘째,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응급환자를 적기에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지원하는 유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응

②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말한다.

③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응급실에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인력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소방청장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운영, 담당인력의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93) 현재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약 418개소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를 대상으로 지원(2026년 기준) 중이며, 향후(‘27년) 지역응급의료센터(약 139개소)까지 확대 추진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사업 개요는 [참고] 참조

94) 인공지능 기반의 구급상황 통합 관리·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 사업 개요는 [참고] 참조

급의료진료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⁹⁵⁾, 해당 사업의 일환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병상 정보, 진료가능과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 유관기관 간의 정보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차세대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는 바, 2026년도에는 88억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규모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액 >

(단위: 백만원, %)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28	1,624	2,464	1,800	8,833
증가율		13.7	51.7	△ 26.9	390.7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744면)

- 다만, 소방청의 '이송병원 선정기능 시스템' 이용률이 높지 않은 점에서 나타나듯이, 소방청의 '119스마트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통신망(NEDIS/e-gen)⁹⁶⁾'을 이용하는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는 두 시스템을 이중으로 관리⁹⁷⁾하여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이

95)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에서는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사업(2836-314)을 추진 중임.

96)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화 시스템 개요는 [참고] 참조

97) 응급의료기관에서는 119구급대가 작성한 구급활동일지*를 기반으로 병원 전단계의 환자 정보를 병원 자체 시스템(EMR)에 입력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⁹⁸⁾.

- 이처럼 응급의료 관련 시스템이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구축·운영되면서 현장 활용 저하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방청은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은 구급활동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의 일부임. 동 시스템은 병원 PC에서 웹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 가입은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음.

98) 그 밖에 119구급대의 중증도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환자 중증도 파악 일치율이 48.5%에 불과하여, 119구급대원의 환자의 중증도 파악 역량이 부족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응급환자일수록 환자 상태 변화는 역동적이기에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환자 중증도 파악 일치율이 48.5%인 것은 현장 판단 오류가 아닌 응급질환의 특성상 환자 상태가 고도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해외(캐나다·호주·일본)에서도 병원 전 - 병원 단계 일치율 평균은 40~60% 수준이라고 밝힘. 또한, 119구급대원이 시행하는 중증도 분류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및 대한응급의학회가 공동개발·보완한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도구인 Pre-KTAS(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Pre-KTAS는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 혈당, 산소포화도 등 구급장비를 통해 측정된 활력징후와 함께 의식상태, 동공반응, 주요 증상 등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임상 정보를 종합하여 산출되는 객관적인 평가 체계라고 설명함. 또한, 소방청은 병원 전 단계에서는 CT, MRI, 혈액검사 등 전문 의료장비를 활용한 정밀 진단이 불가능하고, 응급환자의 상태는 시간 경과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어 현장 평가와 병원 도착 후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특히 병원 전 단계의 중증도 평가는 중증환자를 과소평가하는 것보다 일정 수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환자의 예기치 않은 상태 악화와 그에 따른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응급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시되고 있으며, 119구급대 운영지침상에도 환자의 안전성을 위해 과소분류보다 과분류를 지향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두 단계 중 분류가 어려운 경우 높은 단계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Pre-KTAS와 KTAS간 단순 일치율만을 근거로 구급대원의 중증도 평가 역량을 판단하기보다는, 병원 전 단계 평가의 목적과 응급의료 현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리 표준지침 발췌

◆ 과소분류 방지 원칙

“환자의 안전성을 위해 과소분류(Under triage) 보다 과대분류(Over triage)를 지향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두 단계중 분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높은 단계를 선택한다”고 명시

<환자 중증도 파악 일치율 (Pre-KTAS와 KTAS 간 일치율, '25.1월~7월, NEDIS 등)>					
구 분	일치	불일치			기타·미상
		소계	과소평가	과대평가	
비율(%)(총 719,488명)	48.5	42.5	22.3	20.2	8.9
• KTAS 1 환자 중 2단계 이상 과소평가한 경우는 11.0% • KTAS 5 환자 중 2단계 이상 과대평가한 경우는 34.0%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 이송병원 선정기능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 설문 개요

- ▶ (대 상) 이송병원선정 기능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사용자(총 470명 참여)
- ▶ (방 법) 온라인 설문(객관식 + 자유응답)
- ▶ (설문기간) '25. 9. 8.(월) ~ 26.(금) 19일간
- ▶ (문항구성) 화면 구성, 사용 편의성 등 5개 분야

□ 항목별 설문 결과

-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웹)의 '이송병원선정'메뉴 항목 화면 구성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는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65(13%)	189(38%)	181(37%)	42(9%)	17(3%)

- 수용여부 회신 과정에서 불편했던 화면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항목명이 불분명함	정보 배치가 복잡함	글씨 크기/가독성 문제	기타
210(33%)	197(31%)	87(14%)	133(21%)

- 현재 회신 방식(웹로그인, 문자 등)에 대해 어떤 채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PC웹	휴대용 태블릿	휴대폰	기타
349(71%)	59(12%)	75(15%)	11(2%)

- 회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는 어디입니까?

수신확인	로그인/인증	환장정보확인	수용여부입력	회신완료확인	기타
141(18%)	86(11%)	258(33%)	153(19%)	83(11%)	64(8%)

- 평소 이송병원선정 회신 업무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109(22%)	158(32%)	158(32%)	55(11%)	14(3%)

- 부담을 느끼는 경우,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인력 부족	시간 부족	다른 업무 우선	시스템 접근 불편	회신이 환자 수용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기타
282(29%)	175(18%)	238(25%)	117(12%)	108(11%)	42(4%)

[참고] 인공지능 기반의 구급상황 통합 관리·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1160-614) 개요

□ 과제개요

- (목적) 소방 구급서비스 분야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구급상황 통합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 기술개발
- (목표) 구급상황에서 수보·이송·이동병원 선정 등 구급대원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인공지능 구급상황 지원·관리 시스템 개발
- (과제기간) '23 ~ '27
- (수행기관)
 - (주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동) (주)나텍 (주)지투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온택트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엠타이지

□ 연차별 예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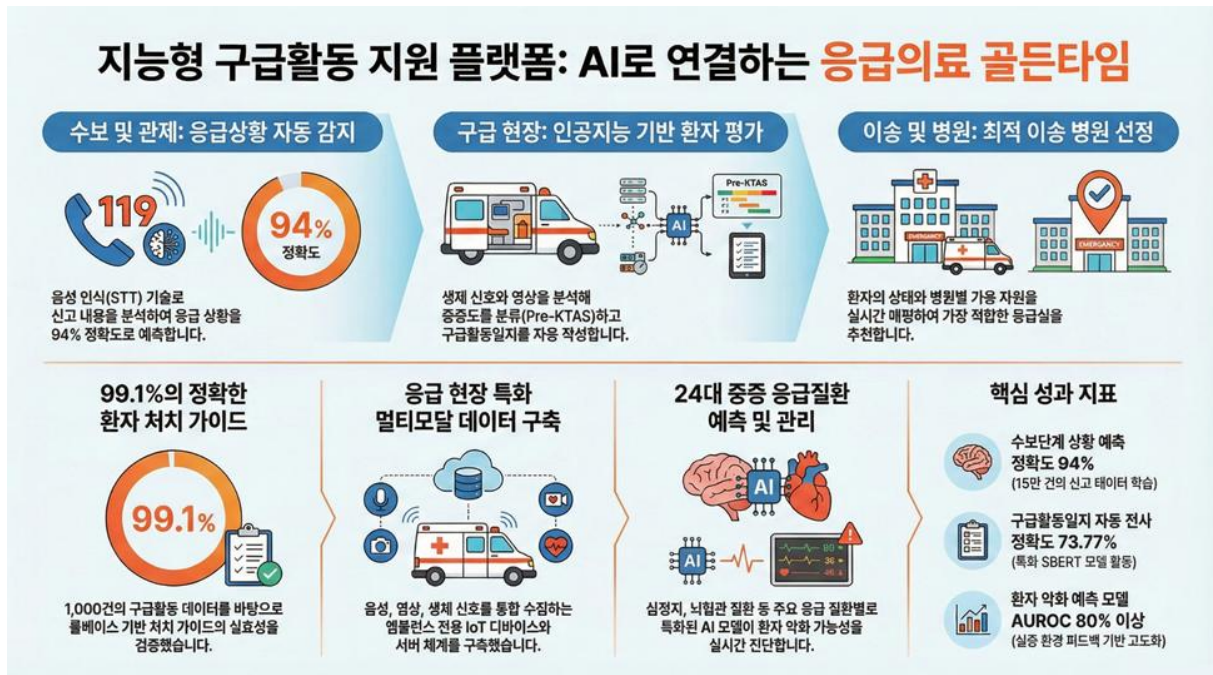
구 분	총사업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13,500	3,000	3,200	3,800	2,000	1,500
① 인공지능 기반의 구급상황 통합 관리·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10,800	3,000	2,500	2,300	1,500	1,500
② 구급활동 중 생체신호 기반 뇌혈관 질환 여부 판단 보조 시스템 개발	2,700	-	700	1,500	500	-

□ 인공지능 기반 구급상황 통합 관리 지원 플랫폼 개발 25년 연구개발 내용

- 수보단계/구급현장단계/의료지도 단계 등 수집된 통합 빅데이터 정제 및 가공
- 구급상황 통합 관리·지원 운영 시스템 고도화
- 구급현장단계 응급상황 환자 평가 인공지능모델 고도화
- Pre-KTAS 예측 항목 연계를 위한 영상 분석 알고리즘 고도화
- 개발 키오스크 환자정보 및 NEDIS 환자정보 매칭 프로그램 구축
- 개발 키오스크를 통해 등록한 환자정보와 NEDIS정보와 연계 시스템 구축
 - ※ 환자정보와 소방 이송정보를 연계, 병원 진단·처치 정보와 비교하여 개발 시스템에 반영

○ '인공지능 기반 구급 상황 통합 관리·지원 플랫폼' 프로그램 실증 테스트

※ 인공지능 기반 구급상황 통합 관리 지원 플랫폼 개발 사업 구성도



[참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응급실 과밀화 및 미수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자원정보의 정확성 개선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의 필요성 제고
 - **(법적기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권역센터는 응급의료 정보관리·제공 전담인력 2인 이상, 지역센터는 1인 이상 배치 규정
 -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 7(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 **(목적)** 응급실 및 병원기반 정보관리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채용(또는 업무조정 통해 투입)한 응급의료 정보관리자*의 인건비 지원
 - *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시간 전송하는 병상정보 및 병원자원 정보, 중증응급 질환 수용가능 정보 등을 수집·최신화하는 인력
 - **(지원 대상 및 내용)**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대상
 - 24시간 365일 근무를 위한 최소 인원(4명)을 고려해 법정 기준 2명 외 추가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 * 40백만원 x 2명 x 44개소 x 70% = 2,464백만원
 - ※ 인건비 지원 형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 재원: 응급의료기금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 2800-2833-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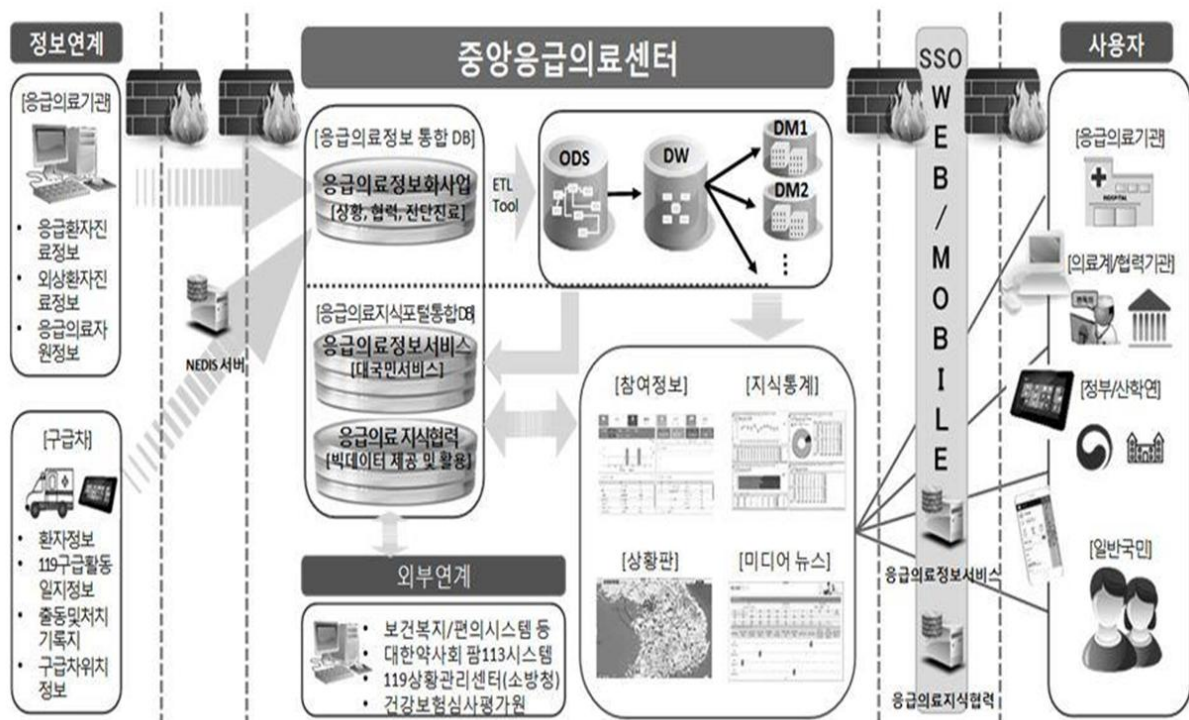
[참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화 시스템 개요⁹⁹⁾

1. 응급의료정보화 사업 개요

□ 배경 및 목적

- **(배경)** 정보의 신뢰성, 적시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정보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 정보 접근성 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양질의 응급의료 정보 및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하여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 응급의료 정책 및 연구를 광범위하게 지원, 국가 응급의료서비스 혁신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
- **(목적)** 응급의료 유관기관 간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

< 응급의료정보망 구성도 >



99)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25. 9., 748-749면.

2. 응급의료정보망 주요 시스템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및 운영 현황



7.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1171-301)

- 소방청은 2025년에 22억원 추경 편성을 통해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예산은 환율 상승에 따른 입찰금액 초과로 전액 이월되었음(집행률 0.0%).

향후, 소방청은 대형 재난 대응과 직결되는 장비 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공급시장 구조 등 사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은 총사업비 증액, 공정 차질, 타선 소화설비 등 성능 미달로 인도가 지연되면서 123억 3,200만원(이월률 57.6%)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에 연동된 ‘소방정대 운영’ 내역사업 역시 선박 미인도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져 당초 예산(17억 3,800만원) 대비 집행률이 23.0%에 그쳤음.

향후, 소방청은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관리 및 제작 공정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은 대형·특수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전국 4개 권역 119특수구조대의 운영을 위한 청사 관리 및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와 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에는 예산액 37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증액한 22억원, 전년도 이월액 82억 9,000만원¹⁰⁰⁾,

100) 선박 건조 지연에 따라 2024년도에 편성된 자산취득비(78억 5,900만원), 감리비 4억 1,500만원, 시설부대비 1,600만원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음.

전용 등을 통한 감액 16억 1,2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62억 5,200만원임. 이 중 67.3%인 31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45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8,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37,374	39,574	8,290	△1,612	-	46,252	31,140	14,532	580	33,007
공무직 운영	2,246	2,246	-	△53	-	2,193	2,105	-	88	2,446
출동차량 및 장비보 강	1,591	1,591	-	△287		1,304	1,304	-	-	6,942
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	2,779	2,779	-	△211	-	2,568	2,516	-	52	2,382
특수구조대 훈련 지 원	617	617	-	65	-	682	657	-	25	449
소방헬기 도입	15,505	15,505	-			15,505	15,505	-	-	15,650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	2,200	-	-	-	2,200	-	2,200	-	-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12,898	12,898	8,290	185	-	21,373	8,653	12,332	388	-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1,738	1,738	-	△1,311	-	427	400	-	27	1,368
RIT 신속동료 훈련장 건립	-	-	-	-	-	-	-	-	-	170
소방헬기 신규 도 입	-	-	-	-	-	-	-	-	-	3,600

※ 자료: 소방청

나.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내역사업 : 사업일정 추가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중양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1.7조원)¹⁰¹⁾’의 일환으로 편성된 것으로,

소방청 중양119특수구조대(영남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헬기(S-92, 시콜스키) 1대에 배면물탱크를 설치하여 소방헬기의 물수송 용량을 향상시켜 향후 대형 산불발생 시 소방헬기를 통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임.

10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1.7조원)’은 최근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더불어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편성된 사업비로 세부 편성 내역을 다음과 같음.

- (사전탐지) AI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 및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68억원)
 - (진화역량)
 - 산림헬기 6대 신규 도입, **중·대형 물버킷 확충(+30대)**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1,077억원)
 - 다목적 산불진화차 확충(+48대),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1,199개소)로 지상 진화역량 강화(+232억원) 등
 - (산림인프라)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2배 수준 투자 확대(+1,008억원)
 - (R&D)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 지원(117억원 신규)
 - (예비비)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1.4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 당초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보강 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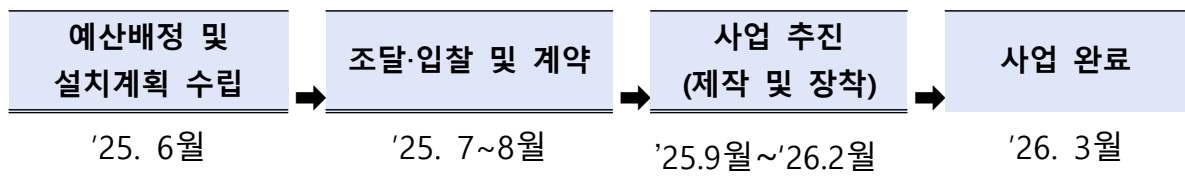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25년

□ 사업비: 2,200백만원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1대 × 2,200백만원 = 2,200백만원
 - 물탱크 구매 : 13억원
 - 헬기 개조 및 설치: 9억원

□ 사업수행방법 : 직접수행

□ 집행계획(당초)



※ 소방헬기¹⁰²⁾ 배면 물탱크 장비 제원

 	구 분	제 원
	탱크용량	3,850L
	탱크무게	325kg
	탱크길이 x 폭 x 높이	3600mm x 2000mm x 300mm

※ 자료: 소방청

102) 배면물탱크를 설치할 소방헬기는 S-92(시콜스키, 2023년 12월 도입)임. 소방청은 S-92 소방헬기는 현재 밤비버킷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상반기에 3,000L 이상 담수가 가능한 물탱크가 개발(호주, H 社)되면서 대용량 물탱크를 S-92 소방헬기에 장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소방헬기를 배면물탱크 보강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함.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도입 내역사업은 편성된 예산액 22억원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음(집행률 0.0%).

< 2025년도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	2,200	-	-	-	2,200	-	2,200	-	-
- 자산취득비 (430-01)	-	2,200	-	-	-	2,200	-	2,200	-	-

※ 자료: 소방청

- 구체적으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사업은 당초 2025년 7월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8월에 계약을 완료한 후, 2025년 9월부터 배면물탱크를 제작하여 2026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소방청의 설치계획 확정이 당초 계획(2025년 6월)보다 다소 늦어졌고(2025년 7월 21일 확정), 이에 따라 조달청 계약 요청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2025년 8월에 이루어졌음.

또한, 조달청 1차 입찰공고('25.11.5.~12.9.)와 2차 입찰공고('25.12.10.~12.23.)가 모두 단일응찰에 그쳤고, 2차 공고에서 기술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가격평가 단계에서 입찰금액(2,139,968,300원)이

동 사업 예정가격(2,018,255,000원¹⁰³⁾)을 초과하여 조달청은 ‘협상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조달요청서를 소방청에 반려하였으며
(‘25.12.30.), 소방청은 2026년 1월에 조달청에 계약을 재의뢰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도에 편성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예산
22억원은 전액 2026년으로 이월되었음¹⁰⁴⁾.

103) 동 사업의 예산은 2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소방청은 2개업체를 비교견적한 결과 최저가인 2,018,255,000
원으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했고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2,018,255,000원액으로 공고하였다
고 소방청은 설명함.

104)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비로, 지출원인행위를 위하
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 「국가재
정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월이 가능함.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
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
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구매 계획 대비 추진 현황 ＞

(2026. 7. 31. 기준)

구 분	당초 계획	추진 현황
예산배정 및 설치계획 수립	2025. 5. ~ 6.	- 예산배정 알림: 2025. 5. 15. - 설치 계획 수립: 2025. 4. ~ 7.
조달·입찰 및 계약	2025. 7. ~ 8.	- 1차: 2025. 8. ~ 12. · 계약 요청: 2025. 8.7. · 입찰공고: 2025. 11. 5(공고기간 33일) · 개찰: 2025. 12.9. * 조달요청서 반려: 2025. 12. 30.
		- 2차: 2026. 1. ~ 현재
		· 계약 요청: 2026. 1. 23
		· 입찰공고: 2026. 4. 2(공고기간 40일)
		· 입찰재공고: 2026. 5. 13(공고기간 13일)
		· 개찰: 2026. 5. 27. / 계약 2026. 7. 1
사업 추진 (배면물탱크 제작 및 납품)	2025. 9.~2026. 2.	2026. 7. ~ 12. (계획)
사업추진 (정착 수리 개조 수행)	2026. 2. ~ 3. (3 ~ 4주)	2026. 12. ~ 2027. 1. (계획) (4주)
사업 완료	2026. 3.	2027. 1.(계획)

※ 자료: 소방청

□ 2025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예산 전액이 2026년도로
이월된 것에 대하여,

소방청은 2025년도에 계약 기준액을 ‘원화’로 설정하였는데 환율
이 계약요청일 대비 개찰일에 1달러 당 91원이 상승하여¹⁰⁵⁾ 예산

¹⁰⁵⁾ - 계약요청일('25.7.21) 환율: 1USD=1,391.70원

- 개찰일 ('25.12.23.) 환율: 1USD=1,482.70원 (1US 달러 당 91원 환율 상승)

대비 입찰금액이 초과되었다고 설명하면서, 2026년도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 기준을 미 달러화로 변경하여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¹⁰⁶⁾하는 등 환율 상승에 따른 입찰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 동 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당시 정부와 국회는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급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예산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재난 대응의 시급성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환율 변동, 제작사 제한¹⁰⁷⁾에 따른 단일 응찰 가능성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보임. 특히, 외화로 계약하는 경우 대금은 미국달러 또는 기타 계약에서 정한 통화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¹⁰⁸⁾, 환율 변동에 따른

106) 조달청 사업예산 산정 '25년 USD 1,450,000(2,017백만원) → '26년 USD 1,395,000(2,021백만원)

※ 규격변경 없음

107) 계약추진을 위한 시장 조사 당시 배면물탱크 장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는 1개 업체밖에 없었으나, 다른 업체(B업체)에서도 배면물탱크 장착 자격(부가형식증명) 취득을 진행 중이었고 입찰 참여 의사를 표시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였으나, B 업체는 입찰 마감일까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1차 입찰은 유찰되었음.

108)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조달청 훈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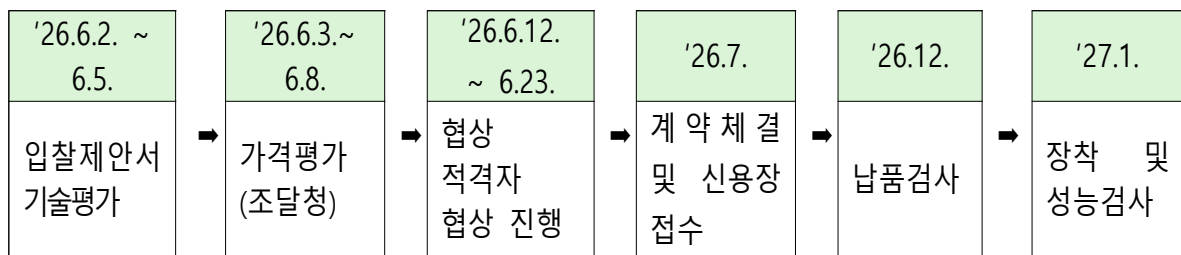
제21조(대금결제) ②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익자의 일람불 어음의 제시에 따라 미국달러 또는 기타 계약에서 정한 통화로 지급된다.

1. 대한민국 조달청을 수화인으로 하고 최종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의 선불, 경우에 따라서는 후불 표시를 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 원본

재정 부담 및 환위험 관리 방안 등 대응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향후 소방청은 대형 재난 대응과 직결되는 장비 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공급시장 구조 등 사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6년 하반기 이후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추진 일정(안) >



※ 자료: 소방청

2. 물품명세, 수량, 단가, 총액 및 인도조건을 명시한 수익자의 세부 송장
3. 표시 및/또는 중량명세서를 첨부한 검정서
4. 해당하는 경우, 포장명세서
5.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② Payment shall be made in U.S Dollars or other currency/ies designated in the contract upon presentation of the beneficiary's sighted draft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다.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 반복적인 일정 지연
및 이에 따른 예산의 연례적 이월 부적절

□ 「중양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은 국가 주요 항만인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국가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고 소방선박 2척(500톤급)을 도입하여 선박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액 12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82억 9,000만원과 전용 등을 통한 증액 1억 8,5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13억 7,300만원임. 이 중 40.4%인 86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23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이월률 57.6%), 3억 8,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 산 현 액	실집 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12,898	8,290	185	21,373	8,653	12,332	388	-
- 공사비(420-03)	-	-	-	-	-	-	-	-
- 감리비(420-04)	91	415	185	691	625	60	6	-
- 시설부대비(420-05)	61	16	-	77	29	47	1	-
- 자산취득비(430-01)	12,746	7,859	-	20,605	7,999	12,225	381	-

※ 자료 : 소방청

□ 국가항만 소방선박 도입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인 일정 지연이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완료가 지연되었음.

- 소방선박 도입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여 2024년 하반기에 선박을 인도받을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025년 12월 및 2026년 1월에 각각 인도되는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년 상당 규모의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2021년 65.0%, 2022년 18.5%, 2023년 16.9%, 2024년 33.4%, 2025년 57.6%임.

<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 현황 >

구 분	국가항만 소방선박 도입 (부산신항.울산항)	국가항만 소방정대(청사) 신축 (부산신항.울산항)
사업목적	국가항만 위험물 운반선박 및 대형선박의 선박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선박 2척 도입	국가항만 선박화재 대응 위한 소방정대 신설
사업기간	2021년 ~ 2026년 (당초 : 2021년~ 2024년)	2021년 ~ 2024년 (당초 : 2021년~ 2023년)
사업규모	소방선박 2척 (500톤급)	부산신항 825㎡(지상2층), 울산항 618㎡(지상2층)
	-소방 501호 인수 : 25. 12. 31. -소방 502호 인수 : 26. 1. 13.	-부산신항 청사 입주 : 25. 2. -울 산 항 청사 입주 : 26. 1.
소요예산	총사업비 637억 2,500만원	총사업비 51억 6,600만원

※ 자료: 소방청

< 소방선박 건조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착공	인도(준공)	임무개시(취항)
소방 501호	당초	2022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4. 8월 기준	2023. 8. 17.	<u>2025. 6.(예정)</u>	<u>2025. 8.(예정)</u>
	2026. 5월 말 현재	2023. 8. 17	<u>2025. 12. 30.</u>	<u>2026. 4. 15.</u>
소방 502호	당초	2022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4. 8월 기준	2023. 10. 16.	<u>2025. 6.(예정)</u>	<u>2025. 8. (예정)</u>
	2026. 5월말 현재	2023. 10. 16.	<u>2026. 1. 8.</u>	<u>2026. 8. (예정)</u>

※ 자료: 소방청

< 소방선박도입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2026년도 집행액은 5. 31. 기준)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B)	불용액	비고 (B/A)
2021	1,200			1,200	4	780	416	65.0
2022	10,088	780	-	10,868	8,834	2,013	21	18.5
2023	18,178	2,013	-	20,191	16,763	3,421	7	16.9
2024	21,361	3,421		24,782	16,370	8,290	122	33.4
2025	12,898	8,290	185	21,373	8,653	12,332	388	57.6
2026	-	12,332		12,332	10,531			

※ 자료: 소방청

- 사업 지연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 착수 이후 선박 건조비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하였고(484억원 → 593억원)¹⁰⁹⁾, 선박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으며(당초 '22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로 지연)¹¹⁰⁾, 고속단정 공급방식 변경¹¹¹⁾, 추진기(워터제트) 수급 지연, 선박 성능 미충족에 따른 계약 변경¹¹²⁾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음.

특히 2025년 공장검사 및 시운전 과정에서 선속(船速) 미달¹¹³⁾과 타선소화설비(방수포,放水砲) 성능 미충족¹¹⁴⁾ 등 선박 성능이 소방청의 요청수준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24년에 계획하였던 소방선박 인도가 2025년 6월에서 다시 연기되어 2026년 1월에 인도가 완료되었음.

- 다만, 소방청은 선박과 타선소화설비를 당초 계획하였던 성능에

109) 소방청은 동 사업과 관련한 최초예산 편성 시 노무비, 부가가치세, 업체이윤 등 필수비용이 누락되어 예산을 재산정하였다고 설명함.

110) 사업추진 시 설계변경으로 품목추가, 탑재장비 요구 성능 미충족 따른 납품기한 연장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음.

111) 고속단정 공급방식이 선주공급방식에서 건조사납품방식으로 변경되었음.
변경 이유에 대하여 소방청은 고속단정 구매계획 시기와 건조사 상세설계 시기가 맞지 않아 선박 건조지연을 방지하고,고속단정 데빃(인양기)의 설계 변경 가능성 및 하자책임 문제 등 종합적 고려하였다고 설명함.

112) 선박 건조 납품 계약 변경이 2차례 진행되었음.

- 1차 변경: 2023. 8. 28(건조 납품기한 - 당초 2024.12.31. → 변경 2025. 2. 28)

* 변경 사유: 추진기(워터제트) 수급 지연

- 2차 변경: 2024. 12. 31.(건조 납품기한을 2025. 4. 30로 변경)

* 변경 사유: 타선 소화설비 성능 미충족

113) 소방청은 선속 20노트를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501호의 선속은 19.2노트, 502호의 선속은 19.3노트였음.

114) 8개의 방수포 중 7개의 방수포가 소방청이 요구한 방수거리에 미달하였음.

* no. 1. 합격(200m)

* no. 2. ~ 3. 불합격(요구 180m → 결과 150m), no. 4. ~ 7. 불합격(요구 150m → 결과 120m)

no. 8. 불합격(요구 80m → 결과 50m).

미달된 수준에서 인도받은 것으로 나타남.

- 소방청은 당초 선박의 선속을 20노트로 요구하였으나, 납품된 선박의 선속은 평균 19.25노트¹¹⁵⁾로 요구한 사양 대비 약 3.75% 미흡한 상황이었음.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부산소방정대 관할구역인 기장 및 통영까지 도착시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약 4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바람 및 조류 등 해상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 차이는 경미한 수준이고, 감리업체 또한 선속 0.75 노트 미달은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경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선박을 4억 4,300만원 감액하여 인수하였다고 설명함¹¹⁶⁾

115) 각 선박별 선속은 1호선 19.2노트, 2호선 19.3노트였음.

116) 소방청은 ①관련규정(소방청 훈령, 조달청 훈령 등), ②책임감리 의견서, ③인수검토 심의회('25.12.4), ④ 계약심의회('25.12.18)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선속의 결점 또는 불량 정도가 사용목적(현장출동)과 실용성(화재진압)을 크게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감가(△443백만원)하여 검사하였다고 설명함.

※ 감가금액(443백만원) = 원가계산 금액(11,799백만원) × 감가율(0.0375)*

* 감가율(0.0375) = 19.25노트(19.2와 19.3 평균값) / 20노트(요구 성능) × 100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규칙」(소방청훈령)

제26조(합격)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할 수 있다.

1. 물품의 결점 또는 불량 정도, 그 밖의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정도가 그 물품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실용성을 크게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감가조건부 합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요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 ③ 제2항의 의견조회에는 계약내용과 검사결과 대비표를 첨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부기하여야 한다.
- ④ 제25조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감가대상 수량에 전 시료수에 대한 감가대상 시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7조(준용규정)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조달청 「감가규정」 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또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감가규정」(조달청훈령)

- 한편, 소방청은 타선소화설비는 제작사(ALOO/독일)에서 다시 제작 중이며, 2026년 3분기 중에 당초 요청한 성능을 충족하는 타선소화설비를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¹¹⁷⁾, 장비 인도 시 엄격한 성능 검사를 통해 장비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체상금 부과 등 납기 지연에 따른 계약상의 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5조(감가방법)

4. 감가계산: 감가적용표 "별표3"에 의하되 감가대상금액은 단순공정의 완제품인 경우(예 : 원단, 모포, 타올 등)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품목은 아래 금액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원가계산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원가계산 기초조사자료 해당가격에 적용 일반관리비율 상한, 이윤율 상한,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 나.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재료비 및 노무비 조사가격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상한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 117) 소방청은 훈련 등을 위하여 성능이 미달된 타선소화설비를 인도 받았으나, 타선소화설비(소화포) 개선 제품을 2026년 3분기 중에 다시 납품받는 것으로 제작사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타선소화설비(방수모니터) 대금 16억 9,400만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 국가항만 소방선박 도입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정 총 사업비 산정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소방청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변경과 납기 연장이 반복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였던 측면이 있음.

향후 소방청은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관리 및 제작 공정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소방선박 도입 일정 지연에 따른 ‘소방정대 운영’ 내역 사업의 집행부진

□ 「중양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방정대 운영 사업은 국가항만 소방정대 2곳을 운영하고 선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액 17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용 등을 통한 감액 13억 1,100만원¹¹⁸⁾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억 2,700만원으로, 이 중 4억원을 집행하고(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 23.0%,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3.6%),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소방정대 운영 내역사업 품목별 집행 현황 >

내역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1,738	-	△1,311	427	400	-	27	1,368
- 일반수용비 (210-01)	14	-	-	14	14	-	-	12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41	-	△104	237	232	-	5	191
- 급식비 (210-04)	-	-	-	-	-	-	-	3
- 임차료 (210-07)	41	-	△20	21	10	-	11	41
- 유류비 (210-08)	1,142	-	△1,142	-	-	-	-	1,017

118) 소방청 인건비 부족 및 중형 소방헬기 구매 조달 수수료 부족 재원마련을 위해 1억 400만원 감액 전용함.

내역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6	-	△45	41	30	-	11	86
- 국내업무여비 (220-01)	34	-	-	34	34	-	-	17
- 사업추진비 (240-01)	-	-	-	-	-	-	-	1
- 무형자산 (440-00)	80	-		80	80	-	-	-

□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 실적이 23.0%로 부진한 사유는 소방선박의 건조 및 도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되었기 때문임.

- 당초 소방청은 2025년 7월부터 소방정대를 정상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유류비(11억 4,200만 원) 등 17억 3,800만 원의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소방선박의 인도 시기가 연이어 지연되어 소방정 2척은 2025년 말과 2026년 초에 각각 도입이 완료되었고 (1호선: '25.12.30, 2호선: '26.1.12), 이로 인해 2025년 연도 중에는 소방정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선박 유류비 등 주요 운영경비의 집행이 저조하였음.

-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정상적인 집행이 불가능해진 소방정대 운영 예산의 75.4%에 달하는 13억 1,100만 원을 회계연도 말인 2025년 12월 12일 이후에 타 사업의 부족 재원으로 전용 또는 세목 변경

하였음. 구체적으로, 소방선박 미인도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유류비 11억 4,200만 원은 전액 소방청 인건비 부족재원으로 전용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1억 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4,500만 원) 등을 안심콜서비스 운영 및 소방헬기 구매 조달수수료 등으로 전용 등을 통해 집행하였음.

< 2025년도 소방정대 운영 내역사업 전용 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5.)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 (1171-301)	210-02	21	119종합상황관리 (7031-301)	210-02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 현행화 및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카카오톡 채널 명칭 변경 부족재원 마련
전용 (25.12.12.)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 (1171-301)	210-02	83	소방청 인건비 (7001-101)	110-01	소방청 인건비 부족재원 마련
		210-08	1,142			
세목변경 (25.12.26.)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 (1171-301)	210-07	20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 (1171-301)	201-01	중형 소방헬기 구매 조달수수료 부족 재원 마련
		210-09	45			
계			1,311			

- ☐ 향후 소방청은 선박 건조, 청사 건립 등 시설·장비 구축사업과 운영예산 편성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실제 운영 가능 시점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도입 일정과 재정 집행 계획을 긴밀히 연계하여 운영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연도 말에 무리하게 전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가항만 소방정대 향후 운영 계획¹¹⁹⁾>

○ 부산소방정대

: 전력화¹²⁰⁾ 3개월(1.15 ~ 4.15) 거쳐 4월 15일부터 임무수행 중

○ 울산소방정대

: 신규 채용을 완료(5.8)하고, 제작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력화 진행중으로(7.1. ~ 9.30.) 10월부터 임무수행 예정

※ 자료: 소방청

119) 참고로, 부산정대와 울산정대는 선박 인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이후의 운영 일정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소방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부산소방정대는 '24. 12월 납품을 전제로 정원을 받았으며, 울산소방정대는 선박 건조지연으로 납품일정이 유동적으로 행안부와 납품일정 등 종합 고려하여 정원을 받음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부산 '24.03.26, 울산 '25.12.31)

· 부산소방정대 : 채용의뢰(2024.06.17.), 채용공고(2024.07.2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24.08.21.),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2024.09.03.), 면접(2024.09.11.), 최종합격자 발표(2024.09.26.), 1차임용(2025.01.03.), 2차(2025.02.10.)

· 울산소방정대 : 채용의뢰(2026.01.06.), 채용공고(2026.02.1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26.03.11.),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2026.03.24.), 면접(2026.04.01.), 최종합격자 발표(2026.04.17.), 임용(2026.05.08.)

120) 입출항, 장비조작, 전술훈련 등

IV. 2024회계연도 소방청 결산 승인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

국회는 소방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총 8건의 시정요구를 하였음. 소방청은, 202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8건을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단위: 건수)

부 처	결산			
	계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소방청	8	8	0	100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6.4.30)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세부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 소방장비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과정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속 가능성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 일부 공사 누락을 통한 타당성 재조사 우회 부적절	시정	조치완료
(5) 현장인력의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등	제도개선	조치완료
(6)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주의	조치완료
(7) 건립 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 정부로부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된 사항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소방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총 8건
가운데 8건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 관련 조치 완료 사항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1)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세부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악화와 신체건강 이상을 예방·치료·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입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됨. - 재정투입 규모: ('20년)32.9억원에서 ('24년)41.6억원으로 5년만에 약 10억원 증가 - '24년에 17명의 소방공무원 자살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중 내근직 공무원이 30.1% 차지 - 상담인력 부족: '24년에 상담인력(총 102명) 1인당 779건 상담 진행 - 정신건강 관련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24년에 5억 6천만원에 불과 ○ [시정요구사항] 소방청은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체계 강화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지침 개정('25.12.16.) * 임용 전부터 퇴직 후까지 생애 전(全)주기 심리지원체계 도입 - 전국 단위 협력병원(정신건강의학과) 운영으로 접근성 강화 및 협력병원 확대('25.11.26.)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 출동 소방대원 정신건강 관련 건강진단 실시('25.11.26.) - 대형참사(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출동대원 후속 심리상담 실시('25.9.3.) - 재난현장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개선방안 마련 자문회의 개최('25.8.29.)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현장 참여 비율 상향 - 직무(화재, 구조, 구급, 행정)별 스트레스 정도* 반영('24.12.4.) * '24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 PTSD, 우울, 외상경험 수치가 높은 직무에 가중치 부여 ※ (현장인력) '24년 67.7% ⇒ '25년 80.7% (행정인력) '24년 30.1% ⇒ '25년 18.2%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6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2) 소방 장비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과정 개선 필요	○ [지적사항] 2024년에 30개사 컨설팅을 목표로 하였으나 15개사만 컨설팅하였음. 이는 소방산업체의 저조한 관심, 복잡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절차, 불충분한 사전 안내, 계약 추진 과정에서의 지원 미흡 등에 기인한 것임. 그 밖에, 소방청의 소방장비 인증 서식과 조달청의 적격성 평가 서식이 달라 보완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을 받고 있던 기업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는 통보에 따른 컨설팅 중단 사례도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소방청은 공공판로컨설팅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고품질 소방장비의 국내외 확산으로 소방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	제도개선	○ ‘25년도 사업 방식 개선 및 소방 산업체 관심도 제고 추진 - (사업방식 개선) 기존 MAS·벤처 나라중심 사업에서 탈피하여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G-PASS 등 컨설팅 분야 다양화를 통한 공공조달 진입 방식 다변화 ※ ‘25년: MAS 2건, 벤처나라 11건, 우수조달 5건, 혁신(시)제품 4건 컨설팅 시행 - (산업체 관심 제고) 소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공공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시행하였으며,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보도** 실시 * (1차) ‘25. 7. 21.(월) / (2차) ‘25. 9. 29.(화) ** (1차) ‘25. 7. 19.(수) 조간 보도 / (2차) ‘25.9.17.(수) 조간 보도 ○ 향후 참여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자부담금 제도 도입, 사업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 조사 등 사업 개선 지속 추진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21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3)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속 가능성 강화 필요	○ [지적사항] 2024년도에 플랫폼을 수탁·운영한 민간업체가 위탁운영 과업 71건 중 22건이 미흡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느라 사업이 연내에 완결되지 못하였음.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과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임. 유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227건)가 무상 데이터 등록 건수(412건)에 비해 0적이고, 유상거래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2023년 2억 3,660만원 → 2024년 1억 1,730만원, 1억 1,930만원 감소), 플랫폼을 통해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증가 규모(연평균 증가율 2.0%)가 미미하여,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소방청은 사회적 현안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소방분야 빅데이터 품질 제고, 유통 활성화, 위탁운영 지속 가능성 강화, 플랫폼 실질적 활용성 개선 등에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품질 체계 수립·적용 -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정의 / 데이터 이상 값 수정 및 삭제, 좌표계 변경 등 ※ 모든 데이터 상품에 표준·품질 적용 및 데이터상품 목록 개편 완료('25.7.3.) ○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의 데이터 유통·이용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25.6.13.) ① 공공분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매지원 ※ '26년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위탁 운영 사업계획 수립('25.10.21.) ②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심구역* 확대 * 플랫폼 보유 데이터 및 청 미개방 데이터를 열람·분석 가능한 공간 ※ '대구 데이터 안심구역'과 협약 체결('25.9.18.) 및 소방공무원 대상 운영 개시('25.11.18~) ③ AI 적용 확대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도 제고 ※ AI기반 데이터 검색 기능 및 데이터 상품 설명 자동 생성 기능 등 홈페이지 구현 완료('25.11.28.) ○ 민간(카드사 등) 참여 확대(8→16)를 통한 데이터상품 다각화* 및 설명회·간담회 개최 * 주요데이터: 카드결제, 마트상품, 외식 배달 POS데이터 등 ※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설명회('25.7.4.) /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협력을 위한 간담회('25.9.29.)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4) 일부 공사 누락을 통한 타당성 재조사 우회 부적절	○ [지적사항] 소방청은 소방병원 건립공사 내용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회하는 부적절한 집행을 하였음 - 2021년 교통영향평가 결과 지하주차장 1개 층을 추가하게 되어 약 300억원(기존 총사업비 대비 약 33%)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음 -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증액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나 소방청은 '타당성 재조사'시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기본 설계 단계까지 반영된 헬리패드·의료 가스장비공사 등을 제외한 후 총사업비를 168억원(기존 총사업비 대비 약 18.5%)만 증액하여('21.12.)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 - 소방청은 202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제2항*을 근거로 총사업비 78억원을 타당성 재조사 없이 증액하여 기존에 제외했던 설비를 반영하였고 부족한 공사비는 2024년 예산 전 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소방청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형해화하였는 바, 향후 유사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시 정	○ 총사업비관리지침 위반을 방지하고자 국립 소방병원 담당자 특별 교육을 실시함. [계획수립 : '25. 7. 11. / 교육실시 : '25. 7. 14.] ○ 향후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추진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사전 연찬하여 지침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7월 14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5) 현장 인력의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등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마음건강 고위험군, 사망 및 자살사고 현장출동자 등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해 심리적 문제의 예방·관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이나, 2024년도 행정인력의 참가율(749명 참가, 6.5%)이 현장인력의 참가율(1,685명 참가, 3.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동 사업은 각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어 시·도별 여건 및 해당 지역 소방공무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시·도별 1인당 교육 비용(202,247원~990,000원)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1인당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이에 비례하여 상승하지는 않는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소방청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현장인력 참여율을 높이고 적절한 교육비를 편성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 정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현장 참여 비율 상향 - 직무(화재, 구조, 구급, 행정)별 스트레스 정도 * 반영(‘24.12.4) * ‘24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 PTSD, 우울, 외상경험 수치가 높은 직무에 가중치 부여 ※ (현장인력) ‘24년 67.7% ⇒ ‘25년 80.7% (행정인력) ‘24년 30.1% ⇒ ‘25년 18.2%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26.2.20.)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의 적절한 교육비 편성 등 운영지침 개정 ○ 조치완료일 : 2026년 2월 20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6) 119항공정비 시설 건립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은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함 - 동 사업은 실시설계 기간이 당초 계획(4개월, '24.1.~4.) 대비 지연(13개월, '24.7.~'25.7.)되었는데 이는 연약지반 보강공사 재원 확보(1차 총사업비 조정, '24.12.) 및 법정의무 시설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추가(2차 총사업비 조정, '25.6.)로 인한 것임 -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21.4.~11.) 시 경찰청 충북항공대 격납고, 해양경찰청 포항격납고 등을 참조하였는데 해당 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없고,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에너지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재검토하기로 조달청과 협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충북항공대 격납고와 포항격납고는 군부대 비행장 내에 위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소방청은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집행 관리를 하여 119항공정비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 소방청은 향후 유사 건립 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정 의무시설 추가 설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항공정비시설 건립사업 추진 관련 특별교육 실시(‘25. 8. 28.) - 119항공정비시설 건립 추진경과 공유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논의 ○ 예산집행(총사업비) 관련 재정경제부 재정교육 이수 완료(‘25. 9. 2.) - 총사업비 집행 관련 법령 및 지침 교육을 통한 예산집행 적용 능력 향상 ○ 119항공정비시설 건립사업 지연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계획 수립(‘26. 1. 5.) -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실시 ○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5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7) 건립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은 경기도 광명시에 국립소방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사업부지 내 위치한 주유소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되었고 총사업비도 당초 352억 9,700만원에서 430억 7,200만원으로 증액됨 - 박물관 부지 내 주유소 등의 보상·철거 협의 지연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음 - 소방청은 광명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광명시가 지장물 정리 등 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당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나, 협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소재 등도 검토하여 사업을 계획·추진할 필요가 있었음 ○ [시정요구사항] 소방청은 향후 대규모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지확보와 관련된 사전조사 및 리스크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협약 시에도 이행책임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분쟁과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건립사업 추진 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사업담당자 변동 시 부서장 주관으로 교육 실시 [계획수립 : '25.12.18. / 교육실시 : '25.12.19.] ○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사전조사를 통해 토지보상 및 수용절차가 완료된 사업부지를 우선 고려하고, 지자체와 협약 시 협약 내용에 이행책임 및 분쟁발생 대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9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8)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필요	○ [지적사항]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훈련시설 설치 예산을 실제 집행할 수 없었음에도 소방청은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음 - 서울의 경우 실화재 훈련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돔 형태의 실화재 훈련장을 건립해야 하는 관계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실화재 훈련장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만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계약을 발주할 수 있음 - 최초 계획과는 달리 2024년 내에 훈련장 건립 및 훈련시설 구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 61억 1,200만원 중 56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설계 공모 및 용역비만을 반영하였음 - 그러나 소방청은 서울시의 예산 및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서 2차례(‘24.3.20., ‘24.4.26.)에 걸쳐 보조금 13억 6,500만원을 전액 교부함에 따라 보조금 전액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소방청은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개선을 위한 자체 개선방안(5종) 마련 - ① 사전 심사강화, ② 교부방법 개선, ③ 집행점검 강화, ④ 2개년 사업 추진, ⑤ 교육 정례화 ○ ‘26년부터 훈련시설 구축시 2개년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국회 확정) - ①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충북) ② 실화재훈련시설 보강(강원·전남) □ 향후계획 ○ 훈련시설이 없거나 소규모인 시·도의 건립 지원을 위해 ‘26년에 신규 3개소(충북·강원·전남), 기존 1개소 반영(울산) 및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 지속 관리·운영 - ‘26년(34억원) : (구축) ^{1년차}충북, (보강) ^{1년차}강원·전남, ^{2년차}울산 ‘27년 이후 : 부산(학교부지 내 구축), 경기북부(신축부지 내 구축), 경북·제주·광주(보강 추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일